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협약 주제별 해설서

사회권

2025년 8월 31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번역본 복제 또는 재출판 요청](#) 문의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5년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X 계정 https://x.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목차

일러두기	6
서문	7
I. 건강	8
A. 적용 범위	8
B. 재생산 건강	8
1. 의료보조출산	9
2. 대리출산	11
3. 낙태	12
4. 산전 선별/검사	14
5. 불임시술	15
C. 예방접종	16
D. 건강 정보	17
E. 중증질환자 추방	19
F. 치료 및 의약품 접근성	
II. 노동권	22
A. 협약의 고용 분야 적용 가능성	24
B. 직업 접근권	26
1. 형사 전과 및 그에 준하는 처분	26
2. 경력	27
3. 국가안보	28
4. 정치적 견해/종교적 신념	28
C. 해고	30
1. 종교적 신념	30
2. 정당 가입	31
3. 성적 지향	31
4. 건강	32
5. 공익신고	32

6. 직장 내 모욕적 표현물 게시.....	33
7. 노동조합 활동.....	33
8. 판사.....	34
9. 재판청구권/실효적 사법 심사.....	35
D. 성평등.....	36
E. 긴축재정 조치로 인한 공무원 보수 및 연금 삭감.....	38
F. 노동 착취/인신매매.....	39
G. 직업상 부상 및 건강.....	42
III. 노동조합권.....	44
A. 적용 범위.....	45
B. 노동조합 등록.....	46
C. 노동조합 가입 또는 비가입 권리.....	47
D. 단체교섭권.....	48
E. 파업권.....	50
F.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의 권리.....	52
IV. 사회보장급여 및 연금.....	55
A. 일반적 고려사항.....	55
1. 적용 범위.....	55
2. 판단재량.....	60
B. 부모/가족 급여.....	61
C. 사회보장 및 고용 혜택.....	63
D. 연금.....	65
V. 주택.....	69
A. 일반적 고려사항.....	70
1. 적용 범위.....	70
2. 판단재량.....	71
B. 퇴거/주거 상실.....	73
C. 임대료 통제.....	75

D. 국가의 기타 통제 조치	77
E. 주택급여	79
VI. 특정 취약 집단	81
A. 이주자/비호신청자	82
B. 장애인	84
1. 특정 구역, 건물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85
2. 장애급여/조세 감면	87
3. 교육	90
C. 로마족	92
인용 판례 목록	93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의 여러 조항에 따라 사회권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조문별 판례 해설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년 1월 18일, § 154, Series A no. 25, 및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2016년 7월 5일).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여러 문제를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30078/06, § 89,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VI,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최근 유럽인권협약 제 15 의정서는 협약 전문에 보충성의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재판소 간에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국가 당국과 법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Grzeđa v. Poland* [GC], § 324).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구(舊)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결은 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문

1. 1950년에 채택된 유럽인권협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구분하는 사상을 반영하였다. 1952년에 채택된 제 1 의정서를 포함하여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 목록은 명백히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여기에 1961년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이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사회헌장 제정과정의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는 이 문서가 협약의 사회 분야에 대한 “보완 장치(pendant)”로서 마련된 것임을 시사한다(*Beeler v. Switzerland* [GC], 2022, § 50). 실제로, 협약과 그 의정서가 보호하는 권리 중 노동조합권, 강제노동 금지, 교육권, 차별 금지 등은 유럽사회헌장(1961년 헌장 또는 1996년에 채택된 개정헌장)에서도 규율되고, 때로는 더 상세하게 규정되기도 한다. 두 조약은 서로 보완하고 의존하는 체계이다.

2. 또한 유럽인권협약은 본질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권리 중 상당수는 사회적·경제적 함의를 지닌다. 협약이 다루는 영역과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영역 사이에는 명확히 구분되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협약의 해석이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Airey v. Ireland*, 1979, § 26; *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GC], 2005, § 52). 재판소는 판례에서 협약의 여러 조항이 사회적 성격을 띠는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3. 이 판례 해설서는 사회권과 관련된 재판소의 판결을 요약하고 분석한 것이다. 이 해설서는 보건, 노동권, 노동조합권, 사회보장급여 및 연금과 같은 주제를 비롯하여, 주거권이나 특정 취약 집단의 권리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사안까지 다룬다. 다수의 유관 판례가 있고, 협약의 실제적 조항 중 상당수와 관련된다. 이 해설서는 여러 다른 주제별 사안을 중심으로 협약의 다양한 조항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조명한다.

I. 건강¹

협약 제 3 조

“누구도 고문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협약 제 8 조 -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공권력은 국가 안보, 공공의 안전, 국가의 경제적 복리를 위해, 무질서 또는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A. 적용 범위

4. 건강에 관한 권리는 협약 또는 그 의정서에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체약국은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되(*Vavříčk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 282), 다만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원 배분, 정책 우선순위 설정, 사회적 수요를 판단하는데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국내 당국의 판단재량(margin of appreciation) 범위 내에 있다(*Vavříčka and Others v. Czech Republic* [GC], 2021, §§ 274 및 285). 재판소의 판례는 다양한 건강 관련 주제를 폭넓게 가져와 아래 각 절에서 협약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 및 적용 가능성을 논점의 중심에 두고 다룬다.

B. 재생산 건강²

5. 부모가 될 권리는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재판소는 부모가 되기를 바랐으나 그럴 수 없었거나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겪는 정서적 고통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2017, § 215). 사생활이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가족생활이라는 개념 또한 유전적 의미에서 부모가 되거나 되지 않기로 하는

¹ 또한 [유럽인권협약 제 2 조에 대한 해설서](#), [유럽인권협약 제 8 조에 대한 해설서](#), [주제별 해설서 - 사회권](#), [주제별 해설서 - 수형자의 권리](#) 참조 및 이주자와 관련된 보건 문제의 사회적 측면은 아래 ‘특정 취약 집단’ 참조.

² 또한, [유럽인권협약 제 8 조에 대한 해설서](#) ‘사생활’ 중 ‘재생산권’과 ‘가족생활’ 중 ‘의료보조출산/유전적 부모가 될 권리’ 참조.

결정에 대한 존중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Dickson v. the United Kingdom* [GC], 2007, § 66; *Evans v. the United Kingdom* [GC], 2007, §§ 71-72). 따라서 부부가 의료적 도움을 받아 출산할 권리는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표현으로서 제 8 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S.H. and Others v. Austria* [GC], 2011, § 82).

6. 그러나 재판소는 의학적 보조생식이나 대리출산과 같이 유럽 차원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판단재량이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H. and Others v. Austria*, 2011, §§ 94-97; *Mennesson v. France*, 2014, §§ 78-79; *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2017, §§ 182-184 및 194). 다만, 한 개인의 정체성에 핵심적인 요소가 문제인 경우에는, 국가에 부여되는 재량의 폭이 제한된다(*Mennesson v. France*, 2014, §§ 77 및 80). 이러한 제한은 특히 아동이 관련된 사건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때는 정체성 외에도 아동의 사생활에 속하는 다른 본질적인 요소인 아동이 살아가며 성장하는 환경, 아동의 욕구 충족과 복지 보장을 책임지는 사람 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다(*권고적 의견 No. P16-2018-001*, 2019, § 45).

7. 재판소는 제 8 조를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낙태가 건강 및/또는 전반적 안녕을 이유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제 8 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도 보았다(*A, B and C v. Ireland* [GC], 2010, § 214). 여성이 임신한 순간부터 그 사생활은 태아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임신 중단을 규율하는 법률은 여성의 사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는 태아의 권리 등 상충하는 권리 및 자유와 충돌하는 가운데 조율되어야 한다(*Tysiac v. Poland*, 2007, § 106; *A, B and C v. Ireland* [GC], 2010, § 213).

1. 의료보조출산

8. 의료보조출산 분야는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재판소가 마주하는 관련 쟁점도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다.

9. *Dickson v. the United Kingdom* [GC], 2007 사건에서 재판소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의료보조출산 문제를 살펴보았다. 청구인 부부는 남편이 징역형 수형자로 복역 중인 상태로, 남편이 출소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과 아내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이 시기를 놓치면 임신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녀를 갖고자 하였지만 인공수정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였다. 재판소는 배우자 접견권이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라고 해석된 적은 없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국가의 판단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판결하면서도, 해당 시점의 정책 구조는 개별 사안에서 공익과 사익 간 실질적인 이익형량을 배제하고 제한의 비례성 판단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 절차의 부재는 허용 가능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충하는 공익과 사익 간 적절한 균형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다(§§ 82-85).

10. 재판소는 *Evans v. the United Kingdom* [GC], 2007 사건에서 수정란 사용에 동의가 필요한지 심리하였다. 청구인은 그 당시 파트너의 정자로 수정된 자신의 난자를 향후 임신을 위해 보관해 두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파트너는 수정란을 계속 보관하거나 착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 청구인은 국내법이 전 파트너에게 자신이 생물학적 자녀를 가질 기회 자체를 박탈할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인간 수정란을 냉동 상태로 보관하는 행위는, 수정란의 생성과 착상 사이에 시간적 간극을 둘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시간 차를 고려한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청구인은 난자 수정에 동의할 당시 상대방은 법에 따라 언제든지 착상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재판소는 피청구국의 판단재량이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적 의미에서 부모가 되기로 한 청구인의 결정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고 하더라도, 유전적으로 연결된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전 파트너의 결정이 존중받을 권리보다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83-92).

11. 또한, *S.H. and Others v. Austria* [GC],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기증된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시험관 수정(비(非)배우자 보조생식술)을 금지한 국내법에 대한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인공출산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는 도덕적 고려나 사회적 수용성에 기반한 우려 역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특정 인공출산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고, 비록 체약국의 판단재량이 넓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위한 법제는 서로 다른 정당한 이익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2.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해당 시점에서 인정된 넓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특히 심리 대상이 된 법률은 전반적인 보조출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부부(또는 사실혼 관계)의 생식세포를 이용한 시험관 수정(배우자 보조생식술)은 허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해당 법률은 더욱 광의의 의미에서 생물학적 부모와 유전학적 부모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피하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으며, 의료보조출산의 허용 요구와 현대 생식의학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불편한 감정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법률은 시험관 수정(IVF)을 위한 정자와 난자 기증은 금지하면서도, 체내 수정을 위한 정자 기증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생식의학 분야에서 원칙적 접근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려는 입법자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주었으므로 각 당사자의 이익 형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S.H. and Others v. Austria* [GC], §§ 103-107 및 112-116).

2. 대리출산

13. *Mennesson v. France*, 2014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외에서 체외수정 및 대리출산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외국 출생증명서의 등록과 법적 친자관계의 인정 문제에 관한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하였다. 부모와 자녀들 모두 재판소에 청구인으로 출석하였다. 재판소는 부모의 가족생활이 여러 측면에서 제한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협약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장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자녀들의 출생 직후 프랑스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었고, 대체로 다른 가족들과 유사한 환경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으며, 당국이 그들의 상황을 근거로 가족을 분리할 위험이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았다(§§ 87 및 92-94).

14. 재판소는 청구인 자녀들이 제기한 ‘사생활’ 관련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하면서, 프랑스가 자국 내에서 금지된 생식술을 외국에서 이용하려는 것을 억제하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영향은 단지 예정된 부모(intended parents)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자녀의 상황에까지 확장된다. 재판소는 이와 같은 친자관계가 다른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었지만 피청구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특히 예정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경우, 이러한 법적 불일치는 자녀가 사회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생물학적 부모와의 관계는 개인 정체성의 핵심 요소임을 고려하여, 이러한 관계의 생물학적 실재가 확인되고, 해당 자녀와 부모 모두 법적 인정을 원하는데도 그와 같은 법적 연계를 박탈하는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청구인 자녀들의 정체성과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제 8 조) 측면에서 이러한 중대한 제한이 의미하는 바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갖는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판소는 제 8 조에 따른 자녀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결하였다(*Mennesson v. France*, 2014, §§ 96-101; 부모와 자녀가 생물학적으로 관계되지 않았고, ‘비전통적 대리출산’에 따른 해외 출생 자녀와의 분리 조치와 관련된 *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2017 사건 §§ 185-216 에서 재판소의 입장과 비교 및 대조).

15. 따라서 재판소는, 해외에서 체외수정 대리출산으로 출생한 아동이 제 3 자가 기증한 난자를 통해 수정되었고,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작성된 출생증명서상 ‘법적 어머니’로 예정된 어머니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따라 국내법은 예정된

어머니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권고적 의견 No. P16-2018-001](#), 2019, § 46).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Mennesson v. France](#), 2014 사건에서 내린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예정된 어머니와의 법적 친자관계 인정이 거부되면, 예정된 어머니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할 위험, 예정된 어머니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기 어려워질 가능성, 예정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예정된 부모가 이혼하거나 예정된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동이 예정된 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 예정된 어머니가 아동 돌봄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포기할 경우 아동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등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다른 중요한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는 아동을 양육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며 복지 보장을 책임지는 사람을 법적으로 특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권고적 의견 No. P16-2018-001](#), 2019, §§ 40-42; 또한, 해외에서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비생물학적 자녀와의 법적 친자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위탁 보호를 통해 가족생활 유대는 유지된 경우인 [Valdís Fjölfnisdóttir and Others v. Iceland](#), 2021, §§ 71-75 및 미국에서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이스라엘 거주 동성 커플의 자녀로서 그 법적 친자관계는 인정되었지만, 숙인주의로 인한 폴란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인 [S.-H. v. Poland](#) (dec.), 2021, §§ 68-76 참조).

16. 아동과 예정된 어머니 사이의 법적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의 판단재량에 속한다. 다만, 아동과 예정된 어머니 간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적 관계를 국내법상으로 인정하는 절차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권고적 의견 No. P16-2018-001](#), 2019, §§ 53-55). 재판소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과 예정된 어머니 간 법적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이 취약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ibid.*, § 49).

3. 낙태

17. 재판소는 낙태 문제에 사례별로 접근하였고, 영토 내에서 국가의 법적 낙태 허용 여부 또는 낙태를 허용하거나 불허할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18. 재판소는 낙태 시기의 지연으로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거나 제한하려면, 임신부가 최소한 직접 진술할 기회와 그 의견이 고려될 가능성을 보장하는 시의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예방적 절차가 결여된 경우, 국가는 협약 제 8 조 상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Tysiac v. Poland](#), 2007, §§ 117-118).

임신부의 시력 악화 위험에도 불구하고 치료적 낙태가 거부된 *Tysiack* 사건에서 재판소는 절차적 보호장치가 결여된 상태에서, 청구인의 사안에 적용된 국내법상 낙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할 실효적인 기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임신과 출산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생각하면서 심각한 고통과 불안을 겪었다(§§ 119-130).

19. *A, B and C v. Ireland* [GC], 2010 사건에서 재판소는 보건 및/또는 복지를 이유로 낙태를 원했던 청구인들이 아일랜드의 법률상 낙태 금지(형법 조항) 때문에 해외로 가야만 했던 상황에 대한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제 1 청구인의 상황(네 명의 어린 자녀를 위탁 보호에 맡긴 미혼의 실직 여성으로 알코올 의존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이었으며, 또 다른 출산이 자녀의 양육권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제한이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간과하지는 않았지만, 아일랜드가 보건 및/또는 복지상의 이유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깊은 도덕적 가치관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에 부여된 광범위한 판단재량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수긍하였다. 특히 재판소는 유관 법률로 여성이 해외 낙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해외에서 낙태할 수 있었으며, 낙태 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아일랜드 내에서 제공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협약 제 8 조 위반이 아니었다(§§ 239-241).

20. *P. and S. v. Poland*, 2012 사건에서 강간 피해자인 14 세 청구인은 임신 중단을 원하였으나, 현지 공공병원은 낙태 시술을 거부하였다. 그 후 의료인, 언론인, 성직자, 반(反) 낙태 활동가 등 다양한 집단이 청구인을 심각하게 압박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자택으로부터 약 50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비밀리에 옮겨져 낙태 시술을 받게 되었다.

21. 재판소는 청구인의 합법적인 낙태 접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연과 혼란으로 얼룩졌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과 그 어머니(제 2 청구인)는 혼란스럽고 상충하는 정보를 전달받았고, 자신의 견해와 바람을 충분히 참작한 적절하고 객관적인 의료 상담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의 의견이 청취 되고 공정하게 고려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된 절차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108). 청구인의 어머니에 관한 부분에서 재판소는 임신한 미성년자의 상황과 그 부모의 상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낙태 접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양측이 모두 의견을 진술하고 그 견해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서 상반되는 견해를 조율할 수 있는 상담과 조정 기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가족은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임신한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재생산 딜레마와 딸의 선택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임신의 중단 또는 지속 여부 결정에 이 어머니의 이해관계와 삶의 전망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합법적으로 낙태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앞서 언급한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국이 청구인들의 제 8 조 상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112).

22. 나아가, 재판소는 위와 같은 결론에 의거하여 협약 제 3 조 위반이라고도 판단하면서, 청구인이 대단히 취약하였고 그 임신이 법에 어긋나는 성관계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검사의 증명서와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는 의학적 증거가 있었지만, 여러 의료 전문가가 낙태를 말리며 청구인에게 상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하였다. 청구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과 청구인의 견해와 감정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P. and S. v. Poland*, 2012, §§ 161-169).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을 소년 보호 시설에 수용한 조치의 본질적 목적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처한 미성년자가 낙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 조치는 협약 제 5 조제 1 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ibid.*, §§ 148-149).

4. 산전 선별/검사

23. *R.R. v. Poland*,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산전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없어 태아 이상을 근거로 한 낙태를 하지 못한 청구인과 관련된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료진의 지언으로 유전자 검사에 접근하지 못한 결과, 임신 중이던 청구인은 태아의 건강 상태가 불확실한 상태로 고통스러운 6 주를 보내야 했고, 마침내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는 이미 정보를 바탕으로 임신을 계속할지 아니면 합법적인 낙태를 선택할지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재판소는 제 3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R.R. v. Poland*, 2011, §§ 159-162).

24. *Costa and Pavan v. Italy*, 2012 사건에서 재판소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수정 및 임신 중단은 허용하면서도, 의학적 보조생식술하에서 수정란 선별검사는 금지한 이탈리아 법률에 대해 협약 제 8 조 위반을 인정하며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사건에서 낭포성섬유증 보인자인 건강한 부부는 의학적 보조생식술과 선별 검사로 자녀에게 해당 질환이 유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제 8 조 위반이라고 판단한 재판소는 이탈리아법상 동일한 질환이 태아에게 나타날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인공임신 중단을 허용하면서도 그 질환의 유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정란 선별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청구인들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 결론지었다(§§ 60-71).

25. 또한 재판소는 태아에게 유전 질환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산전 검사를 제때 적절히 제공받지 못해 임신 지속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국내법원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협약 제 8 조의 절차적 측면에서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A.K. v. Latvia*, 2014, §§ 93-94).

5. 불임시술

26. 재판소는 불임시술이 개인의 재생산 건강 상태를 중대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불임시술은 인간의 본질적인 신체 기능 중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 결과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안녕, 정서적·영적 삶, 가족생활 등 개인의 인격적 온전성에 여러 측면으로 영향을 미친다(*V.C. v. Slovakia*, 2011, § 106). 따라서 재판소는 불임시술 관련 사건을 심리하면서 불임시술이 청구인의 사생활과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을 제 3 조에 따른 심각성의 기준선(threshold of severity)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고려하였다.

27. *V.C. v. Slovakia*,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로마족 여성 청구인은 병원에 도착한 지 2 시간 반 후, 이미 분만이 진행 중이었고 바로 누운 상태에서 서면으로 불임시술 동의를 요구받아 출산 도중 불임시술을 당한 것에 관한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방식이 환자에게 의사의 결정에 동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지도 제공하지 않은 가부장주의적 접근으로 청구인의 도덕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였고, 불임시술 시술은 당시 매우 젊었던 청구인의 생식능력을 중대하게 제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11-116). 특히 재판소는 청구인이 불임시술로 인하여 파트너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로마족 공동체 내에서 배척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거짓임신 증상을 포함한 심각한 의학적·심리적 후유증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따라서 협약 제 3 조가 위반되었다(§§ 118-120; 또한 *N.B. v. Slovakia*, 2012, §§ 74-81, *I.G. and Others v. Slovakia*, 2012, §§ 120-124 참조).

28. 또한 재판소는 로마족 여성인 청구인의 재생산 건강을 특수하게 고려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부재한 결과,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할 적극적 의무(협약 제 8 조)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불임 시술 및 그 부적절한 사용 문제는, 로마족 공동체의 출산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였고, 그렇게 바라본 결과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우려로 표현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로마족 여성 같은 취약 계층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의 의무기록에 민족 출신 배경이 명시된 점과 관련하여, 의료진이 로마족 여성의 의료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특정한 인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태도로 보아 불임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가 정보에 기초하여 완전히 동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145-155; 또한 *N.B. v. Slovakia*, 2012, §§ 92-99, *I.G. and Others v. Slovakia*, 2012, §§ 141-146 참조).

C. 예방접종

29. 재판소는 비자발적인 의료 처치인 강제 예방접종은 협약 제 8 조 상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을 나타낸다고 판례를 통해 확립하였다(*Solomakhin v. Ukraine*, 2012, § 33 및 관련 판례 다수 참고).

30. *Vavříčka and Others v. Czech Republic* [GC],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질병에 대한 아동 예방접종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아 유치원 입학이 거부된 것에 대한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한 후 제 8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쟁점이 된 조치가 “민주사회에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여러 고려사항 중에서도 특히 국가는 아동 개개인의 최선의 이익뿐만 아니라, 아동 집단 전체의 이익 역시 보건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의 중심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87–288). 재판소는 개인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인구를 보호하려면 예방접종이 필수적이고,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사회 전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300).

31. 나아가 재판소는, 청구인들을 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하게 하여 인격 형성의 시기에 있는 어린 아동이 개성을 발달시키고 중요한 사회적·학습적 기술을 습득할 중요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은 해당 연령대 아동의 건강 보호라는 목적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한 부모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개인적·사회적·지적으로 발달할 모든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박탈한 것은 아니고, 부모가 추가로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수반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을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고 보았다(*Vavříčka and Others v. Czech Republic* [GC], 2021, §§ 306–307).

32. *Pasquinelli and Others v. San Marino*, 2024 사건에서 재판소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데 따른 고용상 조치를 받은 보건 및 사회보건 종사자들의 청구에 대해 제 8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백신 접종이 의무 또는 법적 의무인지, 아니면 단지 자발적이거나 권고된 것인지 여부가 개별 사건에 적용할 접근 방식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57).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법은 법률상 또는 징계상의 제재를 부과하거나 청구인들에게 자동으로 불이익을 초래(예: 미접종 아동은 모두 자동으로 유치원 입학이 제한된 *Vavříčka and Others* [GC] 사건 §§ 59–60)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전국적으로 또는 특정 직종 전체에 불가피하고 중대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백신 접종 의무는 없으며(§§ 62–63), 이 점에서 본 사건은 *Vavříčka and Others* [GC] 사건과 구별된다고 판단하였다.

33. 재판소는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하는 문제는 협약 제 8 조가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의 자율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인정하였다(§ 77). 공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었는지를 심사하면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고용 조치들은 일시적이었고, 재정적 손실도 크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대다수는 적어도 일정 기간은 재배치되어 계속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101-105). 또한, 한 명을 제외하고 재정적 손실이 가장 크게 발생한 경우는 청구인들이 제안받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업무 수행을 거부한 경우로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104). 재판소는 재정적 손실은 전 세계적 유행병과 그로 인해 국가들이 처한 예외적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고 언급하였다(§ 106). 또한, 국가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실제 적용된 조치는 근무하던 부서의 여건, 공공부문 내의 다른 수요 및 청구인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107).

34. 재판소는 예방접종이라는 주제를 개업의가 누리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맥락에서도 고려하였다. *Bielau v. Austria*, 2024 사건에서, 재판소는 백신의 무효성에 관한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개업의에게 징계 제재금(집행유예)이 부과된 사안에서 제 10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의 비례성을 고려하면서, 청구인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부정적 주장이 단정적이었고, 무엇보다도 당시 의학계의 통설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일부 내용은 합리성조차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이와 대조하여, 과학적 확실성이 존재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소수 의견을 표현한 *Hertel v. Switzerland*, 1998 참조)(§§ 41-42). 또한 재판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청구인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발언의 파급력이 대단히 광범위할 수 있다는 점, 의료인의 특수한 직업적 책무, 백신의 중요성과 긍정적 효과, 백신이 가장 성공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보건 개입 수단 중 하나라는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3-44).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부과된 제재(금)가 형사 처벌이 아닌 징계 조치였고, 금액 또한 의사의 평균 월수입보다 적었으며, 최대 벌금 규모에 비해 매우 낮았고, 1 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집행이 유예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비례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45).

D. 건강 정보³

35. 의료정보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는 협약 제 8 조가 보장하는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데 있어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협약 당사국 모두 의료정보의 비밀 존중을 법체계의 핵심적인 원칙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은 협약

³ 또한, [유럽인권협약 주제별 해설서 - 데이터 보호](#) 참조.

제 8 조가 보장하는 권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건강 정보가 전달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Z v. Finland*, 1997, § 95; *L.L. v. France*, 2006, § 44). 이는 단지 환자의 프라이버시 존중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과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환자의 신뢰 유지에도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면,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의료적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할 수 있게 되어 그 결과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염성 질환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Z v. Finland*, 1997, § 95).

36. 재판소는 위에서 언급한 고려사항들이 특히 HIV 감염에 관한 정보의 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불명예와 배척 위험에 노출되어 당사자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고용 상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진단이나 치료받는 것도 주저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사회가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려는 예방 노력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Z v. Finland*, 1997, § 96).

37. *Biriuk v. Lithuania*, 2008 사건은 리투아니아 외딴 지역에서 발생한 에이즈(AIDS) 위협에 대한 보도가 리투아니아 최대 일간지 1 면에 게재된 사례였다. 재판소는 특히, 청구인이 도시에 비해 공동체 밀착도가 높은 시골 마을에 거주하여 해당 보도가 이웃이나 직계 가족이 질병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을 높였고 이로 인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배척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41). 청구인이 HIV 양성임을 다룬 판결문에 실명이 공개된 *C.C. v. Spain*, 2009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법원이 판결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청구인의 이니셜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HIV 감염과 관련된 정보의 비밀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된 사람들의 사생활과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직업적 지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실명을 공개한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강력한 필요성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36-41).

38. 또한 *P. and S. v. Poland*, 2012 사건에서 재판소는, 강간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원치 않은 임신 및 낙태 거부와 관련된 개인적·의료적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것을 문제 삼아, 협약 제 8 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정보 공개가 언론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보았다(§ 133).

E. 중증질환자 추방

39.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외국인의 추방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들이 귀환 조치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사회적 또는 기타 지원·서비스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 체약국 영토에 체류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D. v. the United Kingdom*, 1997, § 54; *N. v. the United Kingdom* [GC], 2008, § 42). 다만,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문제 된 사안에 포함된 강력한 여러 인도주의적 고려사항을 참작하여 중증질환자 추방 결정을 실행하는 것이 협약 제 3 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D. v. the United Kingdom*, 1997, § 54).

40. 영국 당국이 에이즈(AIDS)를 앓고 있던 외국인을 세인트키츠로 추방하기로 한 *D. v. the United Kingdom*, 1997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퇴거할 경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를 현실적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는 비인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불치병 말기 상태였고, 세인트키츠에서 간호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보장되지 않았으며, 돌봐줄 의지나 능력이 있는 가족의 존재가 불확실하고, 도덕적·사회적 지지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52-54). 그렇지만 재판소는 이러한 사건에서 높은 심각성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이후의 판례에서 반복하였다(*N. v. the United Kingdom* [GC], 2008, § 43; §§ 46-51 도 함께 참조. 이 부분에서 재판소는 *D. v. the United Kingdom*, 1997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다루면서도, 해당 사건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보여주지 않았고 인도주의적 고려사항 또한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협약 제 3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퇴거될 경우 삶의 질과 기대수명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퇴거 당시 중증 질환 상태는 아니었고, 건강상태가 얼마나 빠르게 악화될지, 의료적 치료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는 일정 수준의 추정에 의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41.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조지아 국적자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 출신국으로 강제퇴거하려 한 *Paposhvili v. Belgium* [GC],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협약 제 3 조 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재판소는, 이 개념은 중증질환자를 퇴거하면 당장 사망에 이를 위험은 없지만, 수용국에 적절한 치료가 부재하거나 해당 치료에 접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건강 상태가 심각하고 급격하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기대 수명이 크게 단축될 실질적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183). 재판소는, 이러한 조건들이 특정 사건에서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협약 제 3 조에 따라 국가 당국은 청구인의 우려를 심사하고 퇴거될 경우 그들이

직면할 위험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184-85).

42. 위와 같은 접근 방식을 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한 결과, 재판소는 국내 당국이 청구인의 건강 상태 및 조지아 내 적절한 치료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가 직면할 위험을 전혀 평가하지 않은 채 퇴거를 추진한 것은 협약 제 3 조 위반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Paposhvili v. Belgium* [GC], 2016, §§ 200-207). 또한, 당국이 건강이 악화된 청구인이 가족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었는지 협약 제 8 조에 따라 평가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퇴거하는 것 역시 제 8 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ibid.*, §§ 223-226).

43.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은 청구인 추방과 관련된 *Savran v. Denmark* [GC],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Paposhvili* 기준선 심사를 재확인하면서, 해당 기준이 협약 제 3 조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그 질환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33 및 137-139). 재판소는 해당 기준이 충족되어 협약 제 3 조를 적용할 만하다고 고려된 이후에야, 귀환 조치 국가가 *Paposhvili* 판례에서 제시된 제 3 조 상 국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본격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35). 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재판소는 청구인을 튀르키예로 퇴거한다고 해서 협약 제 3 조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높은 심각성의 기준선에 도달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조현병은 심각한 정신질환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협약 제 3 조 적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청구인의 정신증 증상이 악화된다면 그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이나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위험의 현격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하였지만, 이러한 결과가 청구인 본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초래”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청구인이 자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 141-148).⁴

F. 치료 및 의약품 접근성

44. *B.R. v. Switzerland*, 2025 사건에서, 재판소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신청인의 특정 약물에 대한 매우 높은 비용을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소는 전적으로 의료 전문 분야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진술 및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65-66).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약물 사용이 높은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⁴ 또한, [유럽인권협약 주제별 해설서 - 이민](#), §§ 54-55 참조.

예상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일반적인 측면과 특정 사례와 관련하여 모두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포괄적으로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70-71). 이용 가능한 과학적 연구들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사례에서 해당 약물이 높은 치료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재판소는 국내 당국이 제한된 자원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으며, 청구인의 사적 이익과 국가의 상충되는 이익, 그리고 공공 보건 및 사회 보험 시스템과 관련된 비용 간의 균형을 맞춰야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요청된 약물의 가격이 바이알당 80,000 CHF(스위스 프랑)를 초과하고 청구인이 연간 여러 차례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72-77).

45. *Arjocu v. Romania* (dec.), 2025 사건에서, 청구인은 오스트리아에서 받은 의료비에 대해 루마니아에서 전액 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신청인이 국내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경 간 의료비 상환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 권리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했다(§§ 71-73). 재판소는 청구인이 전액 상환 청구를 제출할 당시, 국내법에서 정한 실제 청구권 발생 요건(§ 82)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보호에 필요한 실질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II. 노동권

협약 제 2 조

“1.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

협약 제 4 조 - 노예지도 및 강제노동의 금지

“1. 어느 누구도 노예 또는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2. 어느 누구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3. 본 조의 적용상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본 협약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구금 중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조건부 석방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b) 국방의 의무를 위한 군복무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 대신 실시되는 의무

(c) 공동체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 또는 재난 상황에 요구되는 의무

(d) 시민의 일반적인 의무로서 부과되는 작업 또는 의무”

협약 제 6 조제 1 항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 또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추의 결정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며, 다만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정의의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하여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

협약 제 7 조 - 죄형법정주의

“1. 어느 누구도 행위 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형사상 유죄가 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형사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2. 이 조는 그 행위 시 문명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협약 제 8 조 -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공권력은 국가 안보, 공공의 안전, 국가의 경제적 복리를 위해, 무질서 또는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협약 제 9 조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예배, 선교, 행사, 의식을 통해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공질서, 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협약 제 10 조 - 표현의 자유

-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권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주고받을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사업에 대한 국가의 허가 제도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국가안보, 영토보전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무질서나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를 위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를 위해,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의 유지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하는 형식과 조건에 따라야 하고, 제한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약 제 14 조 - 차별 금지

“본 협약에서 명시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특히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국가 또는 사회계층, 소수민족과의 연계,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한 차별 없이 보장된다.”

제 1 의정서 제 1 조 - 재산권

“1.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재산을 평화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공익을 위하여 그리고 법률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단 위의 규정은 국가가 일반의 이익에 따라 재산의 사용을 규제한다거나, 세금이나 기타의 부담금 또는 벌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법률을 시행할 권리를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A. 협약의 고용 분야 적용 가능성

46. 재판소는 공무원 등의 해고와 관련된 고용 분쟁이 일반적으로 협약 제 6 조의 민사적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고, 이는 *Vilho Eskelinen*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고 반복하여 강조하였다(*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2007, § 62; *Denisov v. Ukraine* [GC], 2018, §§ 51-52).

47. 또한, 협약 제 8 조로부터 일반적인 고용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생활”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폭이 넓은 만큼, 원칙적으로 직업적 또는 영리 활동을 배제하지 않는다(*Oleksandr Volkov v. Ukraine*, 2013, §§ 165-167; *Denisov v. Ukraine* [GC], 2018, §115). 재판소는 개인의 직장 생활을 제한하여 타인과의 관계 형성으로 사회적 정체성을 구축해나가는 방식에 반향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은 협약 제 8 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2014, §§ 109-110).

48. *Denisov v. Ukraine* [GC],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고용과 관련된 상황에서 사생활 문제가 발생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 (i) 문제 된 조치의 근거가 된 사유 때문인 경우(사유 중심 접근법 또는 (ii) 사생활에 미친 결과 때문인 경우(결과 중심 접근법)로 정립하였다(§ 115). 결과 중심 접근법인 경우, 협약 제 8 조는 해당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청구인의 사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ibid.*, § 116).

49. 재판소는 법원장직에서 해임된 판사에 관한 *Denisov v. Ukraine* [GC], 2018 사건에서 결과 중심 접근을 적용하여 문제 된 조치가 청구인의 “사생활”을 구성하는 요소인 (i) 청구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 (ii)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발전시킬 기회 또는 (iii) 명예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협약 제 8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20-134). 공직자들이 직위 자체에서 전면 해임된 *Polyakh and Others v. Ukraine*, 2019 사건에서는 재판소는 같은 접근법을 사용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

(§§ 207–211). *Budimir v. Croat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차량 검사원 면허가 취소되어 민간 고용에서도 해임되었으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종결된 사안에 결과 중심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46–47). *Pajak and Others v. Poland*, 2023 사건에서 재판소는 판사의 정년과 관련하여 남녀 간 차등을 두는 법률과 청구인들이 정년을 넘겨 직무를 계속하는 것을 거부당한 것에 대한 권리침해 주장에 결과 중심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210–220).

50. 사유 중심 접근법을 채택한 *Yilmaz v. Turkey*,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아내가 베일을 쓰고, 가정 내에서 부부간 성별 분리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전적으로 기반하여 해외 파견 교사직 임명을 거부한 조치가 협약 제 8 조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하였다(§ 41).

51. 아울러, 협약 제 10 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는 직장 내에서도 적용되지만, 특히 공무원인 경우 재판소는 고용주에 대한 충실의무, 자제의무, 신중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Guja v. Moldova* [GC], 2008, § 70; 판사에 관한 *Kudeshkina v. Russia*, 2009, § 93).

52. 협약 제 10 조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재판소는 사법부에서의 해임 사건에서 해임과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행사 간 인과관계가 존재하였는지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재판소는 사실관계와 사건의 전개 순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였다(*Baka v. Hungary* [GC], 2016, §§ 143–152). 유사한 접근 방식은 공직 취업 접근권이 문제가 된 사건에도 적용되었다(*Cimperšek v. Slovenia*, 2020, §§ 56–59).

53. 또한 재판소는 협약 제 4 조에 따라 강제노동 및 예속 상태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었다(*Siliadin v. France*, 2005, §§ 113–129; *C.N. and V. v. France*, 2012, §§ 70–79 및 88–94). 재판소는 제 4 조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 국제노동기구(ILO)의 1930년 제 29호 강제노동협약 제 2조제 1항에 제시된 정의인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란 “처벌하겠다는 위협으로 강요되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업무 또는 의무”를 참고하였다(*Siliadin v. France*, 2005, §§ 115–116; *C.N. and V. v. France*, 2012, § 71; *S.M. v. Croatia* [GC], 2020, §§ 281–282).

54. 재판소는 “처벌”의 위협하에 강요되는 노동이라고 해서 모두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노동의 유형과 노동량 등 여타 요소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강제 노동”과 가족 구성원이나 공동 거주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수준의 도움을 구별하였다(*C.N. and V. v. France*, 2012, §§ 74–75). 예속 상태에 관하여, 재판소는 이를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 가중된

형태에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특징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가 항구적이고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 점이라고 하였다(*ibid.*, §§ 91-92).

55. 또한 재판소는 노동을 통한 착취가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협약 제 4 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인신매매의 정의에 포함되는 착취 형태 중 하나라고 판례에 언급하였다 (*Rantsev v. Cyprus and Russia*, 2010, §§ 272-282; *Chowdury and Others v. Greece*, 2017, § 93). 사용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노무제공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착취한다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일이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강제 노동 여부는 사실에 관한 문제로 사건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ibid.*, § 96). 비정규 이주 노동자가 계절노동에 고용된 *Chowdury and Others*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자원이 없고 체포·구금·강제퇴거 위험이 있는 비정규이주자로서 취약한 처지였고, 고용주가 위협·폭력·임금 미지급 등으로 대우하여, 비록 채용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고용은 명백히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97-101).

B. 직업 접근권

1. 형사 전과 및 그에 준하는 처분

56. 국가가 특정 범죄경력자를 일정 직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Thlimmenos v. Greece* [GC], 2000, § 47). 다만, 재판소는 전과의 유형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Thlimmenos*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른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한 전과와 달리, 종교적·철학적 신념에 따라 군복 착용을 거부한 것에 대한 유죄판결은 해당 청구인이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할 만한 부정직성이나 도덕적 비열함을 내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구인을 단지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직업에서 배제한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 청구인은 이미 자신의 행위로 인한 징역형을 마친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47). 재판소는 협약 제 9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57. 파산을 이유로 개인이 특정 직업에 종사할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그 부과 방식과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에 따라 협약 제 8 조를 위반할 수 있다(청구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파산자 명부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자동 발생한 것이었고, 명부에서 이름을 제거하려면 파산 절차 종료 후 최소 5년 동안 “실질적이고 일관된 건전한 행실”을 증명해야 했던 *Albanese v. Italy*, 2006, §§ 63-66 참조).

58. *Gouarré Patte v. Andorra*, 2016 사건에서는 새로운 형법에 따라 부가형의 기간이 가장 중한 주형(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으로, 실제로 집행되지 않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더 유리한 형사법의 소급 적용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영구적인 의사직 종사 금지 조치는 협약 제 7 조를 위반한다고 판단되었다(§ 35). 반면, 경찰 수사관 출신의 청구인이 직권 남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변호사업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것은, 사법 체계 내 업무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변호사는 품위, 청렴성, 정의로운 사법행정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협약 제 8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Jankauskas v. Lithuania (no. 2)*, 2017, §§ 77-83).

59. 청구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 당국이 직업 면허를 취소한 *Budimir v. Croat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실제로 형사책임을 지는지 확정되기 전 민간 기업에서 해고된 상황과 관련하여 협약 제 8 조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국가 당국이 형사책임 확정 전까지 청구인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제공하지 않았고, 면허 장기 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청구인이 형평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제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약 제 8 조가 부과하는 적극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58-64).

2. 경력

60. 원칙적으로 국가는 공공부문에서 고용 조건을 규율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 민주국가라면 공무원에게 국가의 헌법적 원칙에 충실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Naidin v. Romania*, 2014, § 49). 공직에 대한 고용 제한은 국가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ibid.*, § 51). 따라서, 공직 분야에서 고용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가 오로지 공공 부문에만 적용된다면, 해당 직위의 높은 책임성과 민간 부문에서의 잠재적 취업 가능성을 고려할 때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정치경찰의 협력자였던 경력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사건인 *Naidin v. Romania*, 2014, §§ 54-55).

61. 다만 재판소는 이러한 요건이 민간 부문의 고용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2004 사건에서 재판소는 충실성 부족을 이유로 구 KGB 요원들이 다양한 민간 분야에 고용되는 것을 제한한 조치는 해당 민간 기업이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이해관계에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협약 제 8 조와 결합한 제 14 조 하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7-58; 또한 *Rainys and Gasparavičius v. Lithuania*, 2005, § 36; *Žičkus v. Lithuania*, 2009, §§ 31-32 참조).

3. 국가안보

62. 국가가 국가안보상 중요한 직위에 대한 후보자의 고용 적격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판단재량이 넓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Leander v. Sweden*, 1987, § 59). 국가안보를 위한 인사관리 제도는 남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협약 제 8 조에 부합한다(*ibid.*, § 67).

63. 청구인이 체코 국방부 제 1 차관 보좌관직을 수행하려면 필수적인 보안 인가가 박탈된 근거가 되는 기밀 정보에 대해 사법심사 절차에서 접근할 수 없었던 *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사건에서 내린 결론도 비슷하였다. 권리의 존재 여부와 그에 따른 협약 제 6 조제 1 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재판소는 청구인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공공부문 내 다른 직위로 이동하려면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보안 인가 박탈 결정과 그에 따른 직무 상실 및 고용 상실 간의 연관성은 그저 희박하거나 간접적인 수준을 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그 박탈 결정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다룰 권리가 있었다(§§ 118-119).

64. 협약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무기대등과 당사자주의 절차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내법원이 기밀 문서의 비밀 유지 필요성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보안 인가 박탈 결정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절차에서 부여된 심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였다고 보았다(*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2017, § 154). 국내법원은 기밀 정보를 공개하면 정보기관의 업무 방식이나 정보 출처를 드러내거나, 잠재적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정보에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국내법원은 청구인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결정할 때 그러한 정보가 관련성이 있다고 수긍하였다(*ibid.*, §§ 155-156). 따라서 재판소는, 전체 절차의 경과, 분쟁의 성격, 국가 당국의 판단재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권리에 가해진 제한은 일정한 방식으로 보완되어, 당사자 간 적절한 균형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손상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4. 정치적 견해/종교적 신념

65. 공직에 접근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정치적 견해나 정치 활동을 고려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협약 제 10 조에 따른 권리를 위반하지 않는다(*Kosiek v. Germany*, 1986, § 39). 다만, 어떤 견해가 해당 직위와 양립할 수 없다고 하려면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Lombardi Vallauri v. Italy*, 2009, §§ 47-49).

66. *Lombardi Vallauri v. Italy*, 2009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이단적 견해를 이유로 교수직 임용을 거부하였을 때 그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해당 직위와의 충돌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나아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협약 제 10 조)에 대한 실효적이고 적절한 사법심사도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협약 제 10 조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54-56). 재판소는 비슷한 사건에서 후자인 제 10 조의 절차적 측면에 특히 비중을 두었다. 청구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국가 당국을 비판하고 선서식 연기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이유로 법원 감정인 자격 부여를 거부한 *Cimperšek v. Slovenia*,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히 문제 된 결정이 표면적으로 추구한 공익과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제 10 조) 간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 10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67-70).

67. 또한, 협약 제 8 조 권리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아내가 근무 외 시간에 베일을 착용하고 부부의 가정 내에서 성별이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의 해외 파견직 임용을 거부한 *Yilmaz v. Turkey*, 2019 사건에서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공공부문 임용 시 특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아내가 베일을 착용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방식이, 공익상 중대한 가치나 교육 및 교원 서비스의 직무상 요구에 어떻게 위배된다는 것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7). 다만, *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2014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기혼 사제”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가톨릭 교리 및 윤리 교사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은 제 8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특히 청구인이 고용을 통해 교회를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충성 의무를 지게 되었고, 이를 알고도 자발적으로 수락한 것이며, 자신의 상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것 역시 스스로 감수한 결과였다는 점을 참작하였다. 가르쳐야 할 교리와 청구인의 개인적 신념 간 불일치는 청구인과 교회 간 신뢰 관계를 단절시켰다(§§ 123-153).

68. 협약 제 9 조에 따른 권리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공공 부문에서의 세속주의와 중립성 원칙을 특히 중요하게 보았고, 이에 따라 회원국에 판단재량을 넓게 부여하였다. 공공병원 서비스의 맥락에서, 국가는 관련 당사자에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치료받는 환자가 의료진의 중립성에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직무 수행 중 종교적 신념을 외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Ebrahimian v. France*, 2015, §§ 64-65). 공공병원의 사회복지사가 직장에서 머릿수건을 착용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부된 사안인 *Ebrahimian* 사건에서, 재판소는 종교적 신념과 이를 외적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직무상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국가의 중립성과 공평성 요건을 우선시하기로 한 결정이 피고국의 판단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제 9 조 상 권리에 대한 제한은 그 목적에 비추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ibid.*, §§ 65-72). 다만, 서로 다른 맥락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항공사 직원이 유니폼 규정이 반하여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는, 재판소는 상충하는 권리 간 균형을 도모한 국내법원의 판단이 사용자의 기업 이미지 제고라는 목적에 과도한 비중을 두고, 청구인의 제 9 조 상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종교의 자유라는 맥락에서 다원주의와 다양성 원칙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종교적 상징이 갖는 외형상의 소박함과 그 영향의 경미함을 강조하였다(*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3, §§ 93-95).

69. 또한, 공직 선서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 유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 이는 협약 제 9 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하였다(*Alexandridis v. Greece*, 2008, § 38).

C. 해고

70. 재판소는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협약에 따른 국가의 소극적 의무(공공부문 근로자의 해고)와 적극적 의무(민간부문 근로자의 해고)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1. 종교적 신념

71. 분쟁이 발생하면 협약 제 9 조에 따라 당해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인 노동법 분야에서 국가가 노동법원 체계를 갖추고, 그 결정에 대해 헌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법 관할권을 마련해 두었다면, 원칙적으로 시민에 대한 협약상 적극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Siebenhaar v. Germany*, 2011, § 42). 청구인이 개신교 교구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종교 공동체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Siebenhaar* 사건에서, 재판소는 노동법원이 관련 이해관계에 대해 충실하게 이익형량을 평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교회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해고가 불가피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의 활동이 직장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어야 한다는 해당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었다(§§ 43-47).

72. *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3 사건에서, 한 기독교 신자가 지방 공공 기관에 근무하면서 혼인에 대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시민결합 등록을 거부하여 해고되었다. 재판소는 협약상 상충하는 협약 권리 간 균형을 도모함에 있어 국가에 폭넓은 판단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해당 지방 당국의 정책은 그 목적이 협약으로 보호하는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채택된 조치는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므로, 제 9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106).

73. 재판소는 협약 제 8 조의 맥락에서도 유사한 사안을 살펴보았다.

- 모르몬교 교회에서 고위직을 맡은 청구인이 간통을 이유로 해고된 *Obst v. Germany*, 2010 사건 §§ 43-53 에서 재판소는 신뢰성을 유지할 교회의 의무와 관련된 청구인의 충실 의무를 고려할 때 해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또한, 가톨릭 교구의 오르간 연주자 겸 합창단 지휘자의 해고에 대해 제 8 조 관련 상이한 결론을 내린 *Schüth v. Germany*, 2010, §§ 71-75 참조).
- 종교 교사가 이혼 후 재혼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Travaš v. Croatia*, 2016 사건 §§ 87-115(*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2014 사건 §§ 123-153 에서 확립된 원칙에 따라 제 8 조 위반 아님. 또한, 위의 직업 접근권 참조).

2. 정당 가입

74. 재판소는 사법적 보호장치 없이 근로자의 특정 정당 가입만을 이유로 해고를 허용하는 법체계는 남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Redfearn v. the United Kingdom*, 2012, § 55).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협약 제 11 조 상 권리에 우선할 수 있는지를 국내 법원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ibid.*, § 56).

75. *Redfearn v. the United Kingdom*, 2012 사건에서, 정당 가입을 이유로 해고된 버스 운전사인 청구인인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 때문에 해고에 대해 다룰 수 없었다. 재판소는 이러한 요건이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근거하고 있음을 수증하면서, 인종·성별·종교 등을 사유로 한 해고에는 해당 1년 요건에 대한 여러 예외가 존재하는 반면, 정치적 의견이나 정당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에는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53-54).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정치적 의견이나 정당 가입을 이유로 해고되는 근로자(근속 1년 미만 포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속기간 1년 요건에 대한 새로운 예외를 마련하거나, 정치적 의견 또는 정당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대한 독립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제 11 조 상의 적극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57; 또한, 유사한 취지에서, 교사가 독일 공산당(DKP) 활동 당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Vogt v. Germany* [GC], 1995, §§ 57-61 참조).

3. 성적 지향

76. 재판소는 여러 사건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군 복무 해임 조치가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특히 청구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이러한 간섭을 정당화할 만한 납득할 수 있고 중대한 이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mith and Grady v. the United Kingdom*, 1999, §§ 94-105; *Lustig-Prean and Beckett v. the United Kingdom*, 1999, §§ 87-98; *Perkins and R. v. the United Kingdom*, 2002, § 38).

4. 건강

77. *I.B. v. Greece*, 2013 사건에서, HIV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동료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압력 때문에 해고되었다. 재판소는 국내법원이 특히 청구인의 질병이 다른 근로자나 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가 부족하여 청구인과 사용자 간 상충하는 이익을 충분히 형량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청구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판결하였다(§§ 86-88).

5. 공익신고⁵

78. 재판소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공공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알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직장에서의 불법행위나 비위를 신고하는 행위는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Guja v. Moldova* [GC], 2008, § 72). *Guja* 사건에서, 청구인인 공무원은 형사사법 행정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증명하는 문건을 언론에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재판소는 신고자의 행위가 신의성실에 기반하였는지, 정보 공개에 공익이 있었는지, 부과된 제재가 중대하였는지 등 다양한 이익을 형량한 결과, 특히 정보 전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민주사회에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협약 제 10 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80-97).

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을 다양한 사실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 러시아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 발언으로 해고된 판사에 관한 *Kudeshkina v. Russia*, 2009 사건 §§ 85-102
- 사용자인 국영 방송사 비판 서적을 출간한 이후 해고된 언론인에 관한 *Matúz v. Hungary*, 2014 사건 §§ 36-51
- 적극적 안락사를 이유로 동료를 형사 고발하였으나, 사실 확인 없이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아 해고된 공공 병원 소속 의사에 관한 *Gawlik v. Liechtenstein*, 2021 사건 §§ 73-87

79. 재판소는,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충실 의무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Guja v. Moldova* [GC], 2008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과 기준은 민간부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Heinisch v. Germany*, 2011, § 64). 민간

⁵ 또한, [유럽인권협약 제 10 조에 대한 해설서](#) ‘내부고발자와 공무원비리신고에 대한 특별한 보호’ 중 ‘내부고발자 보호’ 참조.

요양기관의 간병 서비스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형사 고발한 것을 이유로 해고된 청구인에 관한 *Heinisch*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 신고 권리와 사용자 측의 평판 및 영리적 이익 보호 권리를 비교 형량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해고는 비례성을 결여한 조치로서, 협약 제 10 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71-95; 또한, 유사한 취지에서,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을 이유로 해고된 은행 직원에 관한 *Herbai v. Hungary*, 2019, §§ 39-52 참조).

6. 직장 내 모욕적 표현물 게시

80. *Palomo Sánchez and Others v. Spain*, 2011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노동조합원인 회사 직원으로 동료 직원들을 겨냥한 모욕적인 만평과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재판소는 이 사건이 사실관계가 개인의 의견 보호라는 결사의 자유의 목적과 밀접히 관련된 점에서 결사의 자유(협약 제 11 조)와도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구인들의 주된 불만이 문제의 표현물로 인한 해고였고, 노조 가입 여부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사안을 제 11 조의 관점에서 조명된 제 10 조에 따라 심사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52).

81. 재판소는, 국내법원이 특히 타인의 평판 보호와 노사 관계에서 상호 신뢰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쟁점이 된 상충하는 이익 간 형량을 상세히 수행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제 11 조의 관점에서 해석한 제 10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74-79).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직장 환경에서 극도로 모욕적이거나 불쾌한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인격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질서를 교란하는 효과로 인하여 엄중한 제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았다(§ 76).

7. 노동조합 활동

82. *Straume v. Latvia*,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한 노동조합 대표인 청구인이 노동조합 집행부 구성원들과 함께 사용자를 상대로 제출한 항의서한에 서명한 대가로 직장에서 일련의 불이익 조치를 받은 끝에 해고된 사안에 대한 권리침해 주장을 심사하였다. 재판소는 국내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사안의 노동조합적 맥락을 간과하고 협약상 요구되는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재판소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보낸 항의서한이 조합원의 노동 관련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협약 제 11 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소는 해당 조치가 청구인의 사생활과 직업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도하게 가혹하였고,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정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만든 점도 문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협약 제 10 조의 관점에서 해석된 제 1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03-113).

83. 이에 반해,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조직된 파업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에 관한 *Bariş and Others v. Turkey* (dec.),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 11 조에 따른 보호는 파업 행위를 노동조합 단체가 조직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 11 조에 따라 제기한 해고 관련 권리침해 주장은 협약의 물적 관할(*ratione materiae*)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각하되었다(§§ 45-55).

84. *Hoppen and trade union of AB Amber Grid employees v. Lithuania*, 2023 사건에서, 재판소는 노동조합 간부가 성격, 행태 또는 직장 내 인간관계를 이유로 차별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권리침해 주장을 심사하였다. 재판소는 국내법 체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결사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 청구인을 보호할 적절한 보호장치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206-219). 특히, 재판소는 협약 제 11 조가 노동조합 구성원 또는 간부를 해고하려면 해당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내용까지 국내법에 규정하라고 체약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⁶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절차에서 철저한 심사를 거친 결과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보호를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220-247).

8. 판사

85. 재판소는 협약 제 6 조에 관한 판례에서, 판사의 해임 또는 면직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국제법 및 유럽평의회 법령, 국제법원의 판례가 부여하는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Baka v. Hungary* [GC], 2016, § 121).

86. 판사의 해임에 관한 *Oleksandr Volkov v. Ukraine*, 2013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사건을 심리한 심사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점(또한, *Denisov v. Ukraine* [GC], 2018, §§ 66-82 참조), 징계 처분에 대한 시효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법적 확실성 원칙에 비추어 해임 결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점, 사건을 심리한 국내 행정법원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협약 제 6 조의 여러 조항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03-156). 또한 재판소는, 해당 해임 조치가 국내법과

⁶ 재판소는 § 215에서, 해당 요건은 관련 ILO 권고 제 143 호(1971, 기업 내 근로자 대표에 대한 보호 및 편의 제공에 관한 권고)는 “해고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공적 또는 사적 독립기관 또는 공동기구와의 협의, 자문 의견 수렴 혹은 합의 요건”을 규정할 뿐,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양립하지 않고, 예측 가능성 요건과 자의적 조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제 8 조)를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판단하였다(*Oleksandr Volkov v. Ukraine*, 2013, §§ 171-187).

87. 반면, 전면적인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판사 자격 심사 절차에 따라 판사가 해임된 *Xhoxhaj v. Alban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사법개혁이 지닌 예외적이고 독자적인 성격 등을 지적하면서, 협약 제 6 조(§§ 280-353) 및 제 8 조(§§ 402-414)와 관련하여 제기된 유사한 주장에 대해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297, 299, 404, 412).

9. 재판청구권/실효적 사법 심사

88. *Baka v. Hungary* [GC],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대법원장 임기가 조기 종료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일반 법원 또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다른 기관의 심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협약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보장되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121-122). 청구인의 해임은 헌법 수준의 입법 조치에 따른 것이었고, 이로 인해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으며, 재판소는 이러한 입법이 법의 지배 원칙과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117 및 121; 또한, 유사한 절차적 보장이 적용된 사건으로 현직 판사가 사법위원회에서 해임된 *Grzęda v. Poland* [GC], 2022, §§ 345-346 및 여성 판사의 임기가 국가사법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조기에 종료된 *Pajak and Others v. Poland*, 2023, §§ 196-198 참조).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 조치와 관련하여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실효적이고 적절한 보호장치가 결여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협약 제 10 조도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74-176). 실제로 재판소는 유사한 사건에서 해임 등 징계 처분에 있어 절차적 보장은 협약 제 10 조 상 표현의 자유 보호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하였다(사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이후 직위에서 해임된 판사에 관한 *Kudeshkina v. Russia*, 2009, §§ 96-97).

89. 해고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주장을 국내 법원이 면밀하고 철저하게 심리하지 않았거나, 해당 주장을 기각하면서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재판소는 협약 제 6 조제 1 항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판단하였다(*Pişkin v. Turkey*, 2020, § 151). *Pişkin* 사건에서 청구인은 테러 조직과 연계되었다는 혐의로 비상입법명령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고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심판권은 형식적으로는 국내법원에 있었지만, 청구인과 국가기관 간 분쟁에 관한 법리 및 사실관계 심리는 실제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구인의 불만에 대한 사법심사 과정이 미흡하고, 판결문에 사유가 결여된 점은 협약

제 6 조제 1 항 위반에 해당한다(§§ 141-150⁷; 또한, *Pengezov v. Bulgaria*, 2023, §§ 49-53 참조).

90.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법의 지배 원칙의 근본 요소로서 실효적인 사법 심사는 비상사태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비상입법명령이 정당성을 갖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계약의 종료 이후, 특히 해당 조치가 사법적 통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국내법원에 의한 실효적 사법심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Pişkin v. Turkey*, 2020, §§ 152-153).

91. 또한, *Pişkin v. Turkey*, 2020 사건에서, 청구인의 해고에 대한 실효적 사법심사가 없었던 것은, 청구인이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호 수준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판소가 협약 제 8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재판소는 다시 한번, 국가안보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기본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반드시, 그 조치의 사유와 관련 증거를 심사할 수 있는 독립 기관에서, 어떤 형태이든 당사자주의 절차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23-229). 실제로, 협약 제 8 조에 따른 '민주사회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에서, 국내법원이 쟁점이 된 이해관계를 면밀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한 요소였다(*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2014, §§ 147-151; *Travaš v. Croatia*, 2016, §§ 108-113; *Pengezov v. Bulgaria*, 2023, §§ 85-87).

92. 또한 재판소는 판례에서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지만, 그러한 면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협약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해고된 대사관 직원이 제기한 소송을 국내법원이 국가 면제를 이유로 각하한 *Cudak v. Lithuania* [GC], 2010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히 청구인이 수행한 주요 직무(교환원 업무)는 국가 권력의 행사나 국가의 주권적 이익 보호와는 관련이 없는 업무였으며, 이는 본래 국가면제가 적용되어야 할 성격의 직무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약 제 6 조제 1 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69-75; 또한, *Sabeh El Leil v. France* [GC], 2011, §§ 55-68 참조).

D. 성평등⁸

93. 성평등 증진은 유럽평의회 회원국의 주요 목표로, 차별적 대우이지만 협약과 양립할 수 있다고 간주하려면 대단히 중대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⁷ 재판소는 유럽사회헌장(개정) 제 24 조(고용 종료 시 보호받을 권리)를 관련 국제 자료로 인용하였다(§ 53).

⁸ 또한, *유럽인권협약 제 14 조에 대한 해설서* 참조.

[GC], 2012, § 127; *Jurčić v. Croatia*, 2021, § 65). 성별을 이유로 한 대우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 국가의 판단재량은 매우 좁게 해석되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 해당 조치가 대체로 목적 달성에 적절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의 맥락에서 필요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Emel Boyraz v. Turkey*, 2014, § 51).

94. *Schuler-Zgraggen v. Switzerland*, 1993 사건에서는, 일상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혼 여성은 첫 아이가 태어나면 직장을 그만둔다는 전제를 국내법원에서 채택한 것이 협약 제 6 조제 1 항과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라고 판단되었다(§§ 64-67). 재판소는 국내법원이 이러한 전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받아들였고, 이에 반하는 주장을 비교 검토하여 그 타당성을 규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67). 아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어머니가 근로 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García Mateos v. Spain*, 2013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국내법원이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성차별을 인정한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고, 그러한 위반을 바로잡을 배상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협약 제 6 조제 1 항과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45-49).

95. 재판소는 직무의 성격이나 수행되는 맥락에 따라 특정 직업 활동에 대한 정당한 요건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Emel Boyraz v. Turkey*, 2014, § 54). 다만, 야간 근무, 농촌 지역 근무, 특정 조건 하에서의 무기 사용 및 물리력 행사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보안요원이 남성 직원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해고한 조치는 남녀 간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ibid.*).

96. 임신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이러한 사유로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성뿐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우의 차이는 성별에 따른 직접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Napotnik v. Romania*, 2020, § 77). 청구인이 두 번째 임신 사실을 통보한 후 해외 외교 공관 근무가 종료된 *Napotnik*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근무하던 영사과가 기능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타인(영사 지원이 필요한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협약 제 12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 아니었다(§§ 78-87).⁹

97. 다만, *Jurčić v. Croat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체외수정으로 임신한 여성이 바로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고용 관련 급여 지급이 거부된 조치에 대해 성별에 따른 직접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라고

⁹ 재판소는 유럽평의회 관련 자료에서 유럽사회헌장(개정) 제 8 조(고용 여성의 모성 보호권), 제 20 조(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고용 및 직업 분야에서 균등한 기회 및 평등한 대우) 및 제 27 조(부양 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균등한 기회 및 평등한 대우)를 인용하였다.

판단하였다(§§ 76-85). 특히 재판소는, 여성의 임신 그 자체를 기만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임신 기간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재정적 의무가 성별에 따른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련 기준을 언급하였다¹⁰ (§§ 73 및 84). 또한 재판소는 모성 보호 조치의 도입은 고용에서 남녀 간 평등한 대우 원칙을 실현하려면 필수적이고, 원칙적으로 임신 기간 중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그 여성이 출산 기간에 근무하는 것이 고용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지 여부나, 일시적으로 고용계약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76). 아울러, 국내법원이 임신으로 인해 청구인은 근무에 적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성은 임신 중에는 일하거나 취업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듯한 암시를 내비친 점에 대해, 재판소는 이러한 판단은 청구인에 대한 성차별의 증거이자 성 고정관념의 표현이라고 보았다(*ibid.*, §§ 76-78 및 83).

98. *Moraru and Marin v. Romania*,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여성 공무원 2 명이 여성에게 적용되는 정년 기준에 도달하였지만, 이후에도 남성에게 적용되는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제기된 청구를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남성보다 낮은 연령에 여성의 근무를 일률적으로 종료시키는 규정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속시키고, 여성을 자율성이 결여된 동질적인 집단으로 취급하면서, 개인의 경력 개발이나 직업에 대한 열망이 남성과 동일할 수 있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이유로 협약 제 12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18). 또한, *Pajak and Others v. Poland*, 2023 사건에서 재판소는 여성 판사의 정년을 60 세, 남성 판사의 정년을 65 세로 정한 법률에 대해 여성 판사 4 명이 제기한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같은 직업에 종사해도 성별에 따라 정년 차이를 두는 것은 대우의 차이라고 판단하면서, 여성 판사에게만 판사로서 지적 능력을 의학적 진단서로 증명하도록 요구한 점에 특히 우려를 표하였다(§ 259). 또한, 정년의 조기 적용이 해당 여성들의 경력과 직업적·개인적 발전 가능성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263). 따라서 협약 제 8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었다.

E. 긴축재정 조치로 인한 공무원 보수 및 연금 삭감¹¹

99. 재판소는 사회 정책 규율에 대한 협약 당사국의 판단재량이 상당히 넓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가 지출 및 수입을 조정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가 당국은 이러한 사안을 규율하는 데 가장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 판단에서 합리적 근거가 명백하게 결여되어 있지 않는

¹⁰ 국제노동기구(ILO) 모성보호협약(제 183 호, 2000 년).

¹¹ 또한, *유럽인권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구체적 사안' 중 '긴축 조치' 참조.

한 재판소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제한된 국가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우선순위 결정이 문제 되는 경우, 국가의 판단재량은 더욱 넓게 인정된다. 다만, 재판소는 공동체의 일반 이익에 대한 요구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 요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Koufaki and Adedy v. Greece* (dec.), 2013, §§ 31-32 및 42; *Da Silva Carvalho Rico v. Portugal* (dec.), 2015, §§ 37-38).

100. 국가가 직면한 경제 및 재정 위기로 공무원의 보수, 수당, 상여금, 연금 등이 삭감된 *Koufaki and Adedy v. Greece* (dec.), 2013 사건에서, 재판소는 문제 된 조치가 예외적인 위기 상황으로 정당화되었고, 청구인을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양립할 수 없는 수준의 생계 곤란 상태에 이르게 할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비례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았다(§§ 37 및 44-46). 재판소가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 사례로는 공공지출 절감 및 중기 경제 회복을 위한 긴축재정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감액된 경우 등이 있다(*Da Conceição Mateus and Santos Januário v. Portugal* (dec.), 2013, §§ 23-29; *Da Silva Carvalho Rico v. Portugal* (dec.), 2015, §§ 40-46; *Žegarac v. Serbia* (dec.), 2023, §§ 94-105).

101. *Kubát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2023 사건에서는 2011 년~2014 년 재정위기 동안 위헌적으로 삭감된 판사 급여의 차액에 대한 소급 지급이 거부되었다. 재판소는 해당 시기 국내에 존재했던 사회·정치적 긴장 상황과 경제 위기 속에서 소급 지급이 국가 재정에 초래할 부담을 인정하였다(§§ 89-91). 또한, 문제 된 조치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사법 기능을 수행할 판사의 능력에 위협이 가해지지 않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93-97).

F. 노동 착취/인신매매¹²

102. 노동 착취와 인신매매 사건에서 재판소는 주로 협약 제 4 조에 따라 당사국이 부담하는 적극적 의무를 심사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의무는 첫째,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행정 체계를 마련할 의무, 둘째, 제 4 조에 반하는 대우를 받은 실제 또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조치를 할 의무, 셋째, 인신매매 범죄 혐의를 실효적으로 조사할 절차적 의무인 세 가지 의무로 구성된다(*S.M. v. Croatia* [GC], 2020, § 306; *Chowdury and Others v. Greece*, 2017, §§ 86-89).

¹² 또한, [유럽인권협약 제 4 조에 대한 해설서](#) 참조.

103. *Chowdury and Others v. Greece*,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계절 농업 노동자로 고용된 상황이 불법 이주 노동자라는 불안정한 지위와 장시간 노동, 무장한 고용주의 지속적인 위협, 임금 미지급 등 열악한 근로 조건을 고려할 때,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94-101).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입법 체계를 마련할 적극적 의무는 이행하였으나, 문제 된 인신매매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조치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그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지도 않았으며, 관련 범죄를 실효적으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협약 제 4 조 제 2 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ibid.*, §§ 103-128).

104. *Siliadin v. France*, 2005 사건에서, 체류 허가 없이 프랑스에 있던 외국인 미성년 청구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종속 상태에 놓여, 쉬지도 못하고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이 협약 제 4 조 상 강제노동 및 예속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13-129). 재판소는 청구인이 겪은 행위를 한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은 것은 당시 시행 중이던 형법에서 실효적 보호책이 결여되었기 때문으로 보아 제 4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ibid.*, §§ 145-149; 또한 *C.N. and V. v. France*, 2012, §§ 105-108 참조).

105. 성매매 착취와 관련된 *S.M. v. Croatia* [GC],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 4 조 상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 개념은 특정 사안에서 인신매매 맥락과 관련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 성매매 같은 심각한 착취 사례에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303). 재판소는, 청구인이 협약 제 4 조에 반하는 대우, 즉 인신매매 및/또는 강제 성매매를 당하였다는 일정한 개연성을 갖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응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당국의 절차적 대응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피청구국이 협약 제 4 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33-347).

106.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형사 소추는, 특히 국가가 해당 개인이 인신매매 피해자일 수 있다는 신빙성 있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 4 조에 따라 부담하는 보호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은 해당 개인이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인지 여부를, 인신매매 피해자 사안에 대해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유엔 *팔레르모 의정서* 및 유럽평의회 인신매매 방지협약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V.C.L. and A.N. v. the United Kingdom*, 2021, §§ 159-160).¹³

¹³ 재판소는 또한, 관련 국제법 및 국제 관행(§§ 97-101)에 따라 ILO 강제노동 관련 기준인 ILO 강제노동협약, 동 협약의 2014년 의정서, ILO 강제노동 판단지표, ILO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 협약 및 권고(1999년) 등을 인용하였다.

107. *V.C.L. and A.N. v. the United Kingdom*, 2021 사건은 대마초 공장에서 일하던 베트남인 미성년자들의 형사소추에 관한 사건이다. 당초 이들이 발견되었을 당시, 노동 착취 및 인신매매의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다는 신빙성 있는 의심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이후에도 형사기소 절차는 계속 진행되었다. 재판소는 국가 당국이 청구인들을 인신매매의 잠재적 피해자로서 처음 인지했을 당시에도, 이후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된 이후에도, 청구인들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약 제 4 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163-183). 아울러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에 관해 수사하지 않은 점이 형사절차 전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고, 이로 인해 협약 제 6 조제 1 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94-210).

108. 또한, 거리에서 조용히 구걸하던 가난하고 취약한 상황의 로마족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Lacatus v. Switzerland*,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인신매매 및 개인 착취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범죄 조직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이들을 구걸 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수단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유럽평의회 인신매매 방지 전문가 그룹(GRETA)이 스위스를 대상으로 작성하였고 구걸을 형사처벌하는 조치가 강제 구걸 피해자들을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밀어 넣는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111-112).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처벌의 중대성과 청구인이 생계 수단으로 의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 구걸이었던 상황에서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부과된 형벌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소는 협약 제 8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07-115; 또한, 이와 대조하여 *Dian v. Denmark* (dec.), 2024, §§ 54-55 참조).

109. *M.A. and Others v. France*, 2024 사건에서 재판소는 성매매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의 일환으로 성적 서비스 구매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형사처벌하는 법률을 심리하였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다수의 청구인이 권리침해 주장을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입법이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 및 성적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38). 재판소는 성매매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인신매매 대응 수단으로서 성적 서비스 구매의 전면적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유럽 내 공감대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에 넓은 판단재량을 부여하였다(§§ 149-153).

110. 재판소는 해당 조치의 비례성을 판단할 때, 오랜 시간에 걸친 복잡한 입법 과정과, 이 사안에 내포된 민감한 도덕적·윤리적 쟁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법적 측면을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점에 주목하였다(*M.A. and Others v. France*, 2024,

§ 158). 아울러 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성매매에 대한 낙인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모든 성매매 종사자의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공 정책을 강화하며,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대안을 제공하여 점진적으로 성매매를 종식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161-164).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판소는 현재 국내법이 성매매와 관련된 쟁점들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이 접근 방식이 향후에도 유럽 및 국제 기준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정교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166-167).

G. 직업상 부상 및 건강

111. 재판소는 청구인이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건강이 악화된 사건을 심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Burdov v. Russia*, 2002 사건에서, 청구인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긴급 구조 작업을 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어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이 보상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재판소는 그러한 판결이 장기간 이행되지 않자, 피청구국이 주장한 재정 부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협약 제 6 조제 1 항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35-38 및 40-42).

112. 또한 재판소는, 건강 관련 청구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문제 된 일부 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나 질병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도 시효가 진행된 경우, 협약 제 6 조제 1 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Eşim v. Turkey*, 2013 사건에서,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테러단체와 교전 과정에서 다치자 제기한 청구가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청구인이 해당 기간 부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상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된 것으로 본 것은 제 6 조제 1 항 위반이다(§§ 22-27).
- *Howald Moor and Others v. Switzerland*, 2014 사건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 노출된 석면에 기인한 질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시효 완성으로 각하되었고, 석면에 의한 질환은 발생 시점과 진단 시점 사이에 수년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는 데도,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인이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보았다(§§ 74-80).

113. 재판소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작업 중 노출되었을 수 있는 건강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성 있고 적절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접근 가능한 절차를

국가가 제공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협약 제 8 조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Roche v. the United Kingdom* [GC], 2005, § 162). *Roche* 사건에서 청구인이 영국군 복무 중 가스 실험에 가담한 결과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의심하여 관련된 복무 기록에 대한 정보 접근을 요청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당시 실험에 가담하여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성 있고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접근 가능한 절차를 국가가 제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청구국이 제 8 조 상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166-167).

114. 특정 직업에서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고려사항은, 직업상 위험을 포함하여,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를 제공할 제 2 조 및 제 8 조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관련될 수 있다(*Vilnes and Others v. Norway*, 2013, § 235;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102). 직업 활동으로 인해 건강상 손상을 입은 잠수사들이 제기한 *Vilnes and Others* 사건에서, 재판소는 잠수 작업에 사용되는 감압표에 관한 필수 정보가 청구인들에게 제공되었는지를 국가 당국이 보장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제 8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국가 당국이 잠수 작업을 허가하고 그 안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국이 잠수업체가 사용하는 감압표에 대해 충분한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236-244).

115. 재판소는 정부가 운영하는 선박 수리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근무 중 장기간 강도 높은 석면에 노출된 결과 건강이 손상되었고, 그중 한 명은 사망에 이른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재판소는, 국가 당국이 해당 근로자들이 근무 기간 동안 그러한 노출에 수반되는 위험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 2 조 및 제 8 조에 따라 입법하거나 기타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사망한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제 2 조 위반을, 그 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제 8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03-117).

III. 노동조합권¹⁴

협약 제 9 조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예배, 선교, 행사, 의식을 통해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공질서, 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협약 제 11 조 - 집회와 결사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무질서나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를 위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군대, 경찰 또는 행정부 구성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협약 제 14 조 - 차별 금지

“본 협약에서 명시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특히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국가 또는 사회계층, 소수민족과의 연계,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한 차별 없이 보장된다.”

제 1 의정서 제 1 조 - 재산권

“1.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재산을 평화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공익을 위하여 그리고 법률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단 위의 규정은 국가가 일반의 이익에 따라 재산의 사용을 규제한다거나, 세금이나 기타의 부담금 또는 벌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법률을 시행할 권리를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A. 적용 범위

116. 노동조합의 자유는 제 11 조에 따라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의 특별한 측면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사회적 대화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결과적으로 사회 정의와 조화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2013, §§ 130).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 내포하는 사회적·정치적 쟁점의 민감성과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제도 간의 광범위한 차이를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직업상 이익을 보호할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당사국에게 폭넓은 판단재량이 인정된다(*Sørensen and Rasmussen* [GC], 2006, § 58; *Manole and "Romanian Farmers Direct" v. Romania*, 2015, § 60).

117. 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단결권을 구성하는 몇 가지로 요소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원만 고용하는 클로즈드숍(closed-shop) 계약 금지,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용자가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권리 등을 제시하였다(*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2013, § 135; *National Union of Belgian Police v. Belgium*, 1975, §§ 38-39¹⁵).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Demir and Baykara v. Turkey* [GC], 2008, §§ 145 및 154¹⁶; *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2013, § 135).

118.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고, 노사관계의 구체적인 발전 양상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협약 이외의 국제법 요소와 그에 대한 유관 국제기구의 해석 및 유럽국가들의 공동 가치를 반영한 관행 또한 고려한다(*Demir and Baykara v. Turkey* [GC], 2008, §§ 85 및 146; *Manole and "Romanian Farmers Direct" v. Romania*, 2015, § 67). 따라서, 제 11 조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결사의 자유의 범위를 국제법상 기준보다 훨씬 좁게 해석하는 것은 재판소가 채택한 해석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National Union of Rail, Maritime and Transport Workers v. the United Kingdom*, 2014, § 76).

119. 다만, 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자유가 노동조합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으로 인해 발생한 급부에 대해 그 적용을 소급할 권리 같은 특정한 국가적 대우를 보장하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유럽사회헌장에도 이러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재판소가 지적한 *Schmidt and Dahlström v. Sweden*, 1976, § 34).

¹⁵ 재판소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면서 1961년 유럽사회헌장 제 6 조제 1 항도 참고하였다.

¹⁶ 재판소는 § 149 에서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유럽사회헌장(개정) 제 6 조제 2 항에 주목하였다.

B. 노동조합 등록

120. 국가로부터 특정한 대우를 보장받을 권리가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판소는 국내법상 노동조합이 제 11 조에 반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2013, § 134; *National Union of Belgian Police v. Belgium*, 1975, §§ 38-39). 재판소는 협약 제 11 조에 따른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적용되려면,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이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2013, § 141). 그러한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 간 체결된 명목상의 법적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직무 내용, 업무 수행 방식, 보수 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ibid.*, § 142).

121. 루마니아 정교회 성직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하였으나 대주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된 *Sindicatul "Păstorul cel Bun"* 사건에서 재판소는 성직자와 교회 간의 관계에 종교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성직자들이 수행하는 일상적 활동과 업무는 고용관계의 여러 특성을 보이므로, 협약 제 11 조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143-148).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당국이 노동조합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종교 공동체의 자율성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루마니아 정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협약 제 9 조에 따라 종파 중립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 제 1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164-166).

122. 개별적으로 영농 활동을 하는 농민들의 단체가 노동조합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거부된 *Manole and "Romanian Farmers Direct" v. Romania*, 2015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재판소는 제 11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특히 국내법상 청구인들에게 공공기관과의 교섭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직능단체를 결성할 권리가 있었고, 기존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지적하였다(§§ 69 및 72-75).¹⁷

123. 재판소가 심리한 노동조합의 자유 관련 사건의 대부분은 근로자 또는 보다 넓게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관한 것이다. 수형자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는 명령에 따라, 청구인인 노동조합 연맹이 작업수형자 노동조합을 제명하라는 명령을 받은 *Yakut Republican Trade-Union Federation v. Russ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노동조합 활동의 관점에서 수형자의 작업이 “일반적인 고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했다. 재판소는 수형자의

¹⁷ 재판소는 ILO 협약을 중심으로 유관 국제 문서도 참고하였다(§§ 68 및 71).

작업이 일반 근로자가 수행하는 노동과는 성격이 달라서, 그 주된 목적이 재사회화 및 갱생에 있고,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며, 의무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43-44). 아울러 재판소는, 어떠한 직업 집단도 제 11 조의 보호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수형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 권리에 대해 유럽평의회 회원국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본 사건에서 수형자 노동조합에 대한 제명 명령은 해당 분야에서 국가 당국에 부여되는 폭넓은 판단재량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 11 조제 2 항의 의미에서 민주사회에 필요한 조치로 보았다(§§ 45-48).

C. 노동조합 가입 또는 비가입 권리

124. 협약 제 11 조는 결사의 자유의 소극적 권리, 즉 어떠한 단체에도 강제로 가입되지 않을 권리 역시 포함한다. 비록 특정 단체에 가입할 의무가 항상 협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의무가 결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제 11 조가 보장하는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노동조합 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클로즈드숍” 계약에 관한 *Sørensen and Rasmussen v. Denmark* [GC], 2006, § 54, 및 *Young, James and Webster v. the United Kingdom*, 1981, § 55). *Sørensen and Rasmussen*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소극적인 노동조합자유권을 보호하지 못한 피청구국의 조치가 제 1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한 재판소는 특히 1961년 유럽사회헌장 제 5 조(“단결권”)에 따라 클로즈드숍 계약의 유지는 해당 조항을 침해한다는 유럽사회권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의 결론을 인용하였다(§§ 72 및 75-77).

125. 제 11 조가 보장하는 보호는, 채용 이후나 면허 발급 이후에 노동조합 가입이 요구되는 상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즉, 노동조합 가입이 고용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조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고용 제안을 수락한 경우라도, 개인이 협약상 소극적 결사의 자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Sørensen and Rasmussen v. Denmark* [GC], 2006, § 56). 고용 조건 중 하나로 노동조합 가입을 수락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재된 강제성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다(*ibid.*, § 59). 또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협약 제 11 조가 보호하는 소극적 결사의 자유권에 내재된 선택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형태의 강제이다(*ibid.*, § 61).

126. 나아가 제 11 조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는 협약 제 11 조 및 제 14 조에 따라 반(反)노동조합적 차별로부터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보호하도록 보장하는 사법 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한다(국내 사법당국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차별은 형사 절차에서만 증명될 수

있다면서 청구인들의 권리침해 주장을 받아들이기 거부한 *Danilenkov and Others v. Russia*, 2009, §§ 123-124; 또한, *Zakharova and Others v. Russia*, 2022, §§ 35 및 42 참조).

127.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반복적으로 해고를 시도한 *Zakharova and Others v. Russia*,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을 사용자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받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이자 간부로서 보호받아야 할 집단에 속한다고 언급하였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노동조합 가입 및 관련 활동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일응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국가 당국이 이와 같은 반(反)노동조합적 조치로부터 청구인들을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보호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았다(§ 42). 따라서 협약 제 11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었다. 또한 재판소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차별에 관한 일응의 증거를 제시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이 피청구국 및 사용자 측으로 전환되고, 사용자는 해당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ibid.*, §§ 36 및 43).¹⁸

128. 반면에, 제 11 조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단체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당 단체나 조직에 가입을 허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한 가치나 이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한 경우, 그 단체가 구성원 자격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이는 결사의 자유가 갖는 실효성을 해치게 된다(*Associated Society of Locomotive Engineers and Firemen (ASLEF) v. the United Kingdom*, 2007, § 39¹⁹). 실제로 노동조합이 자체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정치적 견해를 주장하는 정당 소속 조합원을 제명하려 했으나 금지당한 *영국 기관차 기술자 및 소방관 협회(ASLEF)* 사건은 협약 제 11 조 위반이었다(§§ 47-53; 또한, 유사한 취지에서, 노동조합 대표가 특정인의 조합 가입을 거부한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Vlahov v. Croatia*, 2022, §§ 66-74).

D. 단체교섭권

129. 재판소는 협약 제 11 조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수행할 자유를 보장하고, 체약국은 이러한 행위의 실행과 발전을 허용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Demir and Baykara v. Turkey* [GC], 2008, § 140). 또한 노동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제 11 조에 반하지 않는 조건 아래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¹⁸ 재판소는 이 결론에 이르면서, 차별 사건에서 원고 측의 증명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유럽사회권위원회의 입장과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ILO의 기준을 함께 참고하였다.

¹⁹ 재판소는 §§ 22-24 에서 1961년 유럽사회헌장 제 5 조와 관련된 유럽사회권위원회의 결론 또한 참고하였다.

활동할 수 있도록 국내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141). *Demir and Baykara*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전 판례들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권리를 제 11 조의 본질적 요소이거나, 노동조합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향유하는 데 필수적인 권리로 여기지 않았던 점을 상기하였다(§§ 140-146). 그러나 재판소는 ILO 협약과 유럽사회헌장 내 유관 여러 조항을 비롯하여 국제노동법의 발전 등을 고려한 결과²⁰, 국가가 자국의 제도적 틀 내에서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용자와의 단체 교섭권은 원칙적으로 협약 제 11 조에 명시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의 필수적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고 판결하였다(*ibid.*, §§ 147-154).

130. 재판소는 *Demir and Baykara* 사건에서,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여러 국제법 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한 조치와 청구인들이 지방 공무원으로서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거부한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협약 제 11 조제 2 항의 의미에서 ‘민주사회에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Demir and Baykara v. Turkey* [GC], 2008, §§ 164-170).

131. 그러나 재판소는 단체교섭권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 자체를 포함하거나(*National Union of Rail, Maritime and Transport Workers v. the United Kingdom*, 2014, § 85), 특정 사안에 관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기한 유지할 노동조합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Swedish Transport Workers Union v. Sweden* (dec.), 2004).

132. *Association of Civil Servants and Union for Collective Bargaining and Others v. Germany*,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소수 노동조합이 체결한, 상충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배제하는 국내법 조항에 대해 해당 분야에서 피청구국의 판단재량, 협소한 제한의 범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단체교섭 제도의 적절한 운영이라는 중대한 목적을 고려할 때 제 11 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69-75).

133. 나아가 제 11 조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단체교섭을 위한 법률상 강제 절차를 마련하는 데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Unite the Union v. the United Kingdom* (dec.), 2016, §§ 65-66). 농업 부문에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Unite the Union*에서 이러한 결론에 내리면서 재판소는 이 분야에서 유럽평의회 회원국 사이에 확립된 공감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청구국에 폭넓은 판단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²⁰ 재판소는 §§ 147-149에서 ILO 협약 제 98 호(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ILO 협약 제 151 호(1978년)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 절차에 관한 협약, 유럽사회헌장 제 6 조제 2 항(튀르키예 미비준) 및 이 조항에 대한 유럽사회권위원회의 해석을 참고하였다.

유럽사회헌장 등 유럽 및 국제 규범 역시, 국가가 제 11 조에 따라 단체교섭을 위한 법률상 강제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61-63).

134. 재판소는 단체협약이 연금 수급권 등 재산권을 부여하는 경우,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관점에서 단체교섭권을 검토하였다(*Aizpurua Ortiz and Others v. Spain*, 2010, §§ 39-40). 이전 단체협약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한 추가 퇴직연금 수급권이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변경된 *Aizpurua Ortiz and Others*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이 단체협약의 변경이 회사의 재정적 안정 확보, 고용 보호, 단체교섭권 존중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했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소는 이 변경 조치가 청구인들의 수급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 아니라 일시금 지급으로 대체한 점에 비추어 비례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53).

E. 파업권

135. 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파업권은 노동조합 자유의 필수적 요소는 아니지만, 파업 행위는 협약 제 11 조로 보호된다(*National Union of Rail, Maritime and Transport Workers v. the United Kingdom*, 2014, § 84 및 관련 판례 다수 참고). 재판소는 판례에서 파업권을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낼 권리 및 단체교섭권의 중요한 측면으로 보았고, 이는 유럽사회헌장을 비롯한 관련 국제 인권 규범이 뒷받침한다(*Ognevenko v. Russia*, 2018, § 70, 유럽사회헌장(개정) 제 6 조제 4 항 참고). 다만, 재판소는 협약 제 11 조가 원칙적으로 파업 행위를 보호하는 범위는 해당 파업을 노동조합 기관이 조직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러한 보호가 조합원 개인이나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Bariş and Others v. Turkey* (dec.), 2021, § 45²¹).

136. 국가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면 그 필요성을 정당화할 정도의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Ognevenko v. Russia*, 2018, §§ 72-73). 특정한 철도 종사자는 파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파업에 가담한 기관사가 해고된 *Ognevenko* 사건에서 재판소는 기존의 국제 기준²²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교통수단 및 특히 철도 교통은 필수 서비스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파업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만으로는 파업권의 전면적

²¹ 재판소는 § 46에서, 유럽사회위원회의 판례에 따르면 파업권을 노동조합에 한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결성이 과도한 형식 요건에 종속되지 않는 한 유럽사회헌장(개정) 제 6 조제 4 항에 부합한다고 언급하였다.

²² 재판소는 § 72에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판단(ILO 결정 및 원칙 요약집 § 587)과 유럽사회권위원회의 판단(2008년 9월 1일 판례 요약집)을 함께 인용하였다.

금지를 정당화할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결하였다(*ibid.*). 따라서, 청구인을 해고하여 제 11 조에 따른 결사의 자유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비례성을 상실한 조치였다(*ibid.*, § 84).

137. 아울러, 2 차 쟁의행위(secondary action·노동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 3 의 사용자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을 목적으로 한 파업 행위) 역시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에 대한 법률상 금지는 제 11 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한다(*National Union of Rail, Maritime and Transport Workers v. the United Kingdom*, 2014, §§ 76-78).²³ 2 차 쟁의행위를 법률로 전면 금지한 영국의 제도에 관한 *National Union of Rail, Maritime and Transport Workers*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 조합이 쟁의 대상 사용자에 대하여 이미 조합원에 대한 대표권 행사, 쟁의 조합원을 대리한 사용자와의 교섭, 쟁의 조합원이 근무하는 작업장에서의 파업 조직 등 결사의 자유에서 핵심 요소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점에 주목하여, 청구인 조합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2 차 쟁의행위의 금지 여부가 피청구국의 사회적·경제적 정책에 관한 민감한 입법 정책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국은 이 분야에서 폭넓은 판단재량을 누린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서 해당 법률상 금지가 제 11 조에 따른 청구인 조합의 권리를 비례성이 결여될 정도로 제한한 것에 해당하지 않았다(*ibid.*, §§ 85-89 및 99-105).

138.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2 차 쟁의행위 금지에 대해 피청구국을 상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ILO 와 유럽사회헌장의 여러 관련 감시기구의 판단을 언급하면서, 이런 기구와는 달리 재판소의 역할은 해당 국내법을 추상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협약 제 11 조 상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ILO 전문가위원회와 유럽사회권위원회가 제시한 부정적 평가는, 본 사건에서 2 차 쟁의행위에 대한 법률상 금지 조치가 협약 제 11 조에 따른 국가 당국의 재량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재판소의 기준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일 정도로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National Union of Rail, Maritime and Transport Workers v. the United Kingdom*, 2014, § 98; 또한, 유사한 취지에서, 공무원의 파업 금지에 관한 *Humpert v. Germany* [GC], 2023, §§ 125-127).

²³ 재판소는 § 76 에서, 2 차 쟁의행위가 ILO 제 87 호 협약(1948 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 3 조 및 제 10 조를 근거로 발전한 ILO 위원회의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유로서 인정되고 보호되며, 유럽사회헌장(1961 년) 제 6 조제 4 항에 대한 유럽사회권위원회의 해석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된다고 언급하였다.

F.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의 권리

139. 협약 제 11 조제 2 항에 따라, 군인, 경찰, 국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면 노동조합 권리 행사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는 제 11 조에 명시된 예외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 있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Tüm Haber Sen and Çınar v. Turkey*, 2006, § 35).

140. 공무원 및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Tüm Haber Sen and Çınar v. Turkey*, 2006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조치가 단지 “관련 법률에 그러한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여 “강력한 사회적 필요”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다(§ 36). 재판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에 대한 제한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두 가지 주된 근거로 첫째, 비록 당시 국내법에는 미이행 상태였지만 튀르키예가 이미 비준한 협약이었던 국제노동기구 제 87 호 협약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예정하고 있고, 둘째, 유럽사회권위원회가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한 유럽사회헌장 제 5 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고 제시하였다(§§ 37-39). 이에 따라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협약 제 11 조에 규정된 권리의 향유를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40).

141. 재판소는 여러 국제 문서 및 관행을 근거로 들어,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고, “국가 행정부 소속”이라고 하여 협약 제 11 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국가 당국은 제 11 조제 2 항에 따라 이러한 공무원에게 “합법적인 제한” 정도만 가할 수 있을 뿐이다(*Demir and Baykara v. Turkey* [GC], 2008, §§ 96-108). 또한, 재판소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 행정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국가 행정부 소속”으로 대우하여 그에 따라 단결권과 노동조합 결성권이 제한되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재판소가 청구인들이 협약 제 11 조를 정당하게 원용할 수 있다고 본 *Demir and Baykara* 사건의 경우와 같다(*ibid.*). 이 사건의 구체적 상황(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음)에서 재판소는 해당 제한이 제 11 조제 2 항에서 요구하는 ‘민주사회에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보아, 제 1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보편적·지역적 인권 문서 등을 참조하였다(*ibid.*, §§ 120-127).

142. 다만, 군인의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협약에 의해 금지된다(*Matelly v. France*, 2014, §§ 71-75).

143. 또한, 공무원의 파업권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특정 범주의 공무원에 한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이 공무원 전체나 국영사업체(상업 및 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Enerji Yapı-Yol Sen v. Turkey*, 2009, § 32). 따라서, 파업에 가담한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Enerji Yapı-Yol Sen* 사건에서, 재판소는 모든 공무원의 파업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일반적인 내용의 행정지침은 “강력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는 청구인 노동조합이 협약 제 11 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향유하지 못하게 하는 비례성이 결여된 제한이라고 판결하였다(§§ 32-34).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 *Dilek and Others v. Turkey*, 2007 사건: 조합 활동에 가담한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민사 제재 부과(§§ 72-74)
- *Kaya and Seyhan v. Turkey*, 2009 사건: 파업에 가담한 교사들에게 징계 제재 부과(§§ 30-32).

144. 다만, *Humpert v. Germany* [GC], 2023 사건에서 재판소는, 파업 금지가 노동조합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여 그 실질적 내용을 상실하게 하는지 여부는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고 소개하면서, 공무원의 파업을 전면 금지한 조치와 관련된 *Enerji Yapı-Yol Sen v. Turkey* 판결의 입장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국이 노동조합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며, 조합원의 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전부 고려하는 등, 모든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09 및 124). 재판소는 파업이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이 직업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28).

145. 근무 시간 중 파업에 가담한 공무원 신분 교사들에게 징계 제재가 부과된 *Humpert and Others v. Germany* [GC], 2023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에서 공무원과 공무원 노동조합이 직업상 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128-135). 따라서, 국내 차원에서 실질적인 이익 형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Enerji Yapı-Yol Sen v. Turkey*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문제가 된 조치가 상충할 수 있는 다양한 헌법적 이익 간 철저한 형량과 조화를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45-146). 따라서 협약 제 11 조 위반이 아니었다.

146. 또한 재판소는 *Kaymak and Others v. Türkiye*, 2023 사건에서, 노동조합을 홍보하고 전단을 배포하려 대학 내에 홍보 부스를 설치한 공무원들에게 경고성 징계조치가 부과되자 청구인들이 제기한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제 1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조치가 청구인들의 향후 승진, 임용, 경력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뿐만 아니라 추후 징계 절차에서 더 중한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청구인들이 위축되어 노동조합 활동 참여를 단념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국내법원의 사법 심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58-59).

147. *Junta Rectora Del Ertzainen Nazional Elkartasuna (ER.N.E.) v. Spain*, 2015 사건에서는 경찰관 파업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재판소는 제 1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43). 재판소는 해당 파업 제한 입법이 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치안기관 소속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37). 재판소는 이들에게 부과된 보다 엄격한 요건들이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과 더불어 특히 국가 안보, 공공안전 및 질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협약 제 11 조제 2 항에 명시된 원칙에 부합하고, 민주사회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았다(§ 38)²⁴.

²⁴ 재판소는 § 40 에서 경찰의 파업권 제한이 유럽사회헌장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의 결론에도 동의하였다.

IV. 사회보장급여 및 연금²⁵

협약 제 8 조 -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공권력은 국가 안보, 공공의 안전, 국가의 경제적 복리를 위해, 무질서 또는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협약 제 14 조 - 차별 금지

“본 협약에서 명시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특히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국가 또는 사회계층, 소수민족과의 연계,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한 차별 없이 보장된다.”

제 1 의정서 제 1 조 - 재산권

- “1.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재산을 평화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공익을 위하여 그리고 법률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단 위의 규정은 국가가 일반의 이익에 따라 재산의 사용을 규제한다거나, 세금이나 기타의 부담금 또는 벌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법률을 시행할 권리를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A. 일반적 고려사항

1. 적용 범위

148. 재판소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차별을 주장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주로 협약 제 8 조 보다 제 1 의정서 제 1 조(또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4 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Beeler v. Switzerland* [GC], 2022, §§ 54-56 및 이 조항에서 관련 판례 다수 참고). 제 1 의정서 제 1 조 관련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²⁵ 또한, [유럽인권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유럽인권협약 제 8 조에 대한 해설서](#) 및 [유럽인권협약 제 14 조에 대한 해설서](#) 참조. 주거급여 및 장애급여에 관련된 사회권 판례는 아래의 ‘주택’ 및 ‘특정 취약 집단’을 각각 참조.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Andrejeva v. Latvia* [GC], 2009, § 77). 재판소는 살아가는 내내 또는 일정 기간 생존을 위해 사회보장과 복지급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개인에게 국내법상 사회보장급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한 이익이 중요한 권리로 간주되려면,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GC], 2005, § 51).

149. 재판소는 *Beeler v. Switzerland* [GC], 2022, §§ 57-58 사건에서, 사회보장급여 영역을 포함하여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적용 가능성 판단에 요구되는 기준선에 대해, 그동안의 판례가 충분히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정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Bélané Nagy v. Hungary* [GC], 2016 판결에 제시된 관련 원칙인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재산을 취득할 권리나 특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권리를 창설하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요약하였다. 그 보호 범위는 이미 존재하는 재산에만 적용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어떤 재산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당한 기대가 재산으로 인정되려면, 청구인에게 국내법상 충분히 확립된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주장 가능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Bélané Nagy v. Hungary* [GC], 2016, §§ 74-79). 따라서 청구인이 특정 급여나 연금에 대한 국내법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청구인이 해당 급여에 대한 자격을 얻기 전에 그 요건이 변경되었다면, 제 1 의정서 제 1 조 상의 권리에 대한 제한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연금의 정지 또는 삭감이 청구인의 개인 사정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 자체나 그 집행 방식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라면, 제 1 의정서 제 1 조 상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급여 또는 연금에 대한 국내법상 자격 요건이 변경되고, 그로 인해 당사자가 더 이상 그 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내법상 충분히 확립된 실질적 재산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그 요건 변경의 성격을 중심으로, 개별 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정당화될 수 있다(*ibid.*, §§ 86-89).

150. 예를 들어, *Brazauskienė v. Lithuania* (dec.), 2023 사건에서,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 조항을 무효화하고 입법 조치가 이어진 이후, 리투아니아 전 대통령의 유가족(아내)인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연금 지급이 거부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해당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107-112).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서명자의 유가족(아내)이라는 자격에 따른 다른 형태의 사회보장급여가 소급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이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판결하였다(§§ 119-120).

151. 재판소는 또한,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계약국이 어떠한 형태의 사회보장 제도를 운용할지 결정하거나 그러한 제도 하에서 제공할 급여의 유형이나 금액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다만, 계약국이 법률로 특정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그 지급이 기여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다고 해도, 그 법률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상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특정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불만을 제기한 자격 조건이 없었다면, 국내법상 해당 급여를 받을 강제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을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할 의무는 없지만, 일단 제도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제 14 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GC], 2005, §§ 54-55; *Andrejeva v. Latvia* [GC], 2009, § 77; *Stummer v. Austria* [GC], 2011, §§ 82-83; *Efe v. Austria*, 2013, §§ 45-46; *X and Others v. Ireland*, 2023, §§ 67-69).

152. 또한, 자녀들을 전적으로 돌보던 유가족(남편)에게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된 *Beeler v. Switzerland* [GC],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14 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회보장급여 분야에서 제 8 조가 적용될 수 있는 “가족생활” 측면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관련 기준들을 명확히 하였다(§§ 68-72).

재판소는 먼저, 제 8 조에서 말하는 “가족생활” 개념이 사회적, 도덕적 문화적 관계 외에도 일정한 재산상의 결과를 수반하는 물질적 이익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이러한 해석은 주로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와, 그로 인해 사적 당사자 간 재산 이전에 미친 영향을 문제 삼은 사건에서 채택되었다고 지적하였다(*Beeler v. Switzerland* [GC], 2022, § 59 및 이 조항에서 관련 판례 다수 참고). 재판소는 또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권리침해 주장에 대해 제 8 조 단독으로 심리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제 8 조 단독으로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국가에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특정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ibid.*, § 60 및 이 조항에서 관련 판례 다수 참고; 또한, 동성 파트너 사망 후 유족연금 접근권에 관한 *Zanola v. Italy* (dec.), 2023, § 26 참조).

한편, 재판소는 제 14 조를 제 8 조와 결합하여 해석할 경우, 제 8 조만을 단독으로 해석할 때보다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국가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여 제 8 조 상의 의무를 넘어서는 권리를 창설한 경우, 그러한 권리를 적용할 때 제 14 조가 금지하는 차별적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Beeler v. Switzerland* [GC], 2022, §§ 61-62 및 이 조항에서 관련 판례 다수 참고).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청구는 협약제 8 조와 결합한 제 14 조에 따라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한 사건에서 도출된 사례가 많으므로, 재판소는 *Beeler* 사건에서 제 8 조의 적용 범위 내에 있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권리침해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유관 판례를 분석한 결과, 제 8 조와 결합한 제 14 조를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정의할 때 일관성이 부족함을 발견하였다(*Beeler v. Switzerland* [GC], 2022, §§ 63-66). 특히, 세 가지 상이한 접근방식이 존재하였다. 첫 번째 접근법은, 부모 휴직 및 관련 급여의 수급 여부가 청구인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족생활을 꾸러가는 방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근거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129-130; *Petrovic v. Austria, 1998, § 27*; *Topčić-Rosenberg v. Croatia, 2013, §§ 38-39*). 두 번째 접근법은, 급여의 수급 또는 거부 사실이 가족생활을 꾸러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Di Trizio v. Switzerland, 2016, § 62*; *Belli and Arquier-Martinez v. Switzerland, 2018, §§ 65-66*). 세 번째 접근법은, 해당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가 가족생활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는 법적 추정에 기반한다(*Dhahbi v. Italy, 2014, § 41*; *Weller v. Hungary, 2009, § 29*; *Fawsie v. Greece, 2010, § 28*; *Okpisz v. Germany, 2005, § 32*; *Niedzwiecki v. Germany, 2005, § 31*; *Yocheva and Ganeva v. Bulgaria, 2021, § 72*).

재판소는 협약 제 8 조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두 번째 및 세 번째 접근법은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모든 재정적 급여는 일반적으로 당해인의 가족생활 운영 방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향만으로는 제 8 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Beeler v. Switzerland* [GC], 2022, §§ 67-69). 이에 따라, 재판소는 앞으로 첫 번째 접근법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구체적 맥락에서 제 14 조를 적용하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의 대상이 제 8 조가 보장하는 가족생활 존중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해당해야 하고, 그 조치는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을 꾸러가는 방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ibid*, §§ 70-72).

재판소는 이어서, 문제 된 급여의 성격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를 구체화하면서 특히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재판소가 판단한 해당 급여의 목적, 해당 급여의 지급·산정·종료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명시된 사항, 법령상 예정된 바에 따라 가족생활을 꾸러가는 방식에 미칠 영향, 급여가 지급되는 전 기간에 청구인의 구체적인 개인 사정과 가족생활에 비추어 본 급여의 실제적 영향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총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Beeler v. Switzerland* [GC], 2022, §§ 72-73).

재판소는 *Beeler* 사건 §§ 74-82 에서, 우선 해당 유족연금이 생존 배우자가 직업을 갖지 않고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여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고, 다음으로 연금의 수급이 해당 기간 가족생활을 꾸러가는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아내가 사망한 1994 년 당시, 두 딸의 나이가 각각 한 살 9 개월 및 네 살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청구인은 가족생활을 꾸리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전념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가사와 육아에 헌신하였다. 재판소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유족연금 수급이 청구인이 가족생활을 꾸려가는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협약 제 14 조와 결합한 제 8 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또한, *Beeler* 사건에서 확립된 “가족생활” 적용 기준은, 이후 *Berisha v. Switzerland* (dec.), 2023 사건 §§ 39-45 에서 유형이 다른 사회보장급여인 장애급여에 적용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장애급여/조세 감면” 참조).

153. 또한, 재판소는 *X and Others v. Ireland*, 2023 사건에서, 합법적으로 아일랜드에 체류 중인 두 명의 어머니가 국내법상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편적 법정 아동수당 지급이 거부된 사안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Beeler* 사건에서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해당 수당이 가족생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그 목적이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생활을 꾸려가는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수당 지급은 제 8 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소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Beeler* 사건과 비교하면서, 해당 수당이 청구인들에게 *Beeler*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여러 핵심 요소를 부분적으로라도 그 수당에 기반하여 구성할 정도로 중요한 성격을 지니거나 지닐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각각 1년 8개월 남짓), 해당 기간에는 비록 아동수당을 청구할 자격은 없었지만 두 사람 다 자녀와 함께 거주할 곳이 제공되었으며, 이민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생계 지원을 받았고, 이후 체류 자격이 승인되자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실제로 수급을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X and Others v. Ireland*, 2023, § 74).

154. 나아가 재판소는, 주피보험자의 사적 상황과 가족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로서, 사고 및 질병 보험의 적용 대상을 동거 파트너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이 제 8 조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동성 파트너에 관한 *P.B. and J.S. v. Austria*, 2010, §§ 33-35).

155. 재판소는 또한, 연금 또는 연금 수급권과 관련된 권리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주로 제 1 의정서 제 1 조(단독 또는 협약 제 14 조와 결합)를 기준으로 심리하였다(*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63-65; *Stummer v. Austria* [GC], 2011, §§ 81-86; *Fábián v. Hungary* [GC], 2017, §§ 60-64; *Moskal v. Poland*, 2009, §§ 41-46).

156.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이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 너무 적어 생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 *Budina v. Russia* (dec.), 2009 사건에서, 국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청구인이 극심한 결핍 상태인데도 국가가 무관심한 경우, 그 대우가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제 3 조 상 국가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이 제 3 조의 물질 관할권과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청구인의 국가 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상태가 굴욕적인 대우 금지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였다. 그 결과 제 3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재량

157. 재판소는 대체로 경제적·사회적 전략에 관한 일반적 조치 문제에는 국가에 폭넓은 판단재량을 인정한다(*Luczak v. Poland*, 2007, § 48; *Andrejeva v. Latvia* [GC], 2009, § 83). 국내 당국은 그 사회와 사회의 필요에 대해 직접 인식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기초한 공익을 판단할 때 국제 사법기관보다 원칙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으므로, 재판소는 입법부의 정책적 선택이 “합리적 근거가 명백하게 결여”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이를 존중한다(*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6, § 52;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61). 실제로 재판소는 사회보장제도는 본질적으로 국가 고유의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85; *X and Others v. Ireland*, 2023, §§ 97 및 98²⁶).

158. 또한 재판소는, 사회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국가가 지원이 필요한 여러 집단을 구분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Runkee and White v. the United Kingdom*, 2007, § 39). *Luczak v. Poland*, 2007 사건에서 재판소는, 일반 사회보장제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 재정으로 상당 부분 보조되는 농민 대상 특별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경제적·사회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판단재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52).

159. 다만, 재판소는 국적이나 성별만을 근거로 한 대우의 자치가 협약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보려면 대단히 중대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Gaygusuz v. Austria*, 1996, § 42; *Luczak v. Poland*, 2007, § 48; *Zeibek v. Greece*, 2009, § 46; *P.B. and J.S. v. Austria*, 2010, § 38). 또한 재판소는 개인을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할 중대한 사유가

²⁶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사회보장에 관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부담금 없는 급여를 부여하기에 앞서 소정의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 유럽사회헌장 및 그 부속서를 인용하였다(§§ 53 및 97).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당사자가 일반제도와 특수제도를 막론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회보험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Luczak v. Poland*, 2007, § 52).

160. 국적만을 근거로 한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하려면 “대단히 중대한 사유”가 요구되고, 이는 일반적으로 좁은 판단재량을 의미하지만, 재판소는 이 원칙이 경제·사회 정책 등 국가에 폭넓은 판단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였다. 특히, 제 14 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어떤 사유가 “대단히 중대한 사유”를 구성하는지 평가하는 기준 자체도 그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Savickis and Others v. Latvia* [GC], 2022, § 206). 재판소는 라트비아 외의 구(舊)소련 국가에서 일한 기간은 라트비아 영주권을 가진 비시민의 국가연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서 라트비아 시민과 다른 대우를 한 *Savickis and Others* 사건을 폭넓은 판단재량이 인정되는 정책적 맥락에서 심사하였고, 라트비아 당국이 제시한 근거가 “대단히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207-221).

B. 부모/가족 급여

161. 재판소는 *Weller v. Hungary*, 2009 사건에서 출산수당 수급권에서 생물학적 아버지를 제외하면서도 어머니, 양부모, 후견인에게는 인정된 것은 부모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협약 제 8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재판소는 수급 대상자 범위가 넓은 것은 해당 수당이 단순히 출산의 고통을 겪은 산모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 및 양육을 맡은 가족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하였다(§§ 30-35). 마찬가지로, 출산수당 수급과 관련하여 양모와 생모를 다르게 대우한 *Topčić-Rosenberg v. Croatia*, 2013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 당국이 출산 당시 생모의 상황이 입양 직후 양모의 상황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8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46-47).

162. 재판소는 가족복지급여 또는 아동수당 같은 급여 관련 다른 사건에서도 제 8 조와 결합한 제 14 조에 따라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 *Fawsie v. Greece*, 2010 사건: 국적을 이유로 다자녀 수당 지급 거부(§§ 34-40; 또한, *Saidoun v. Greece*, 2010, §§ 36-42 참조)
- *Dhahbi v. Italy*, 2014 사건: 국적을 이유로 다자녀 수당 지급 거부(§§ 51-54)
- *Okpisz v. Germany*, 2005 사건: 안정적인 체류 허가 유무를 기준으로 외국인 간 아동수당 지급 차등(§ 34; *Niedzwiecki v. Germany*, 2005, § 33 참조)

- *Yocheva and Ganeva v. Bulgaria*, 2021 사건: 부모 중 한 명만 생존한 아동에 대해 가족수당 지급 거부(§§ 114-126)

163. 또한, *Efe v. Austria*, 2013 사건은 청구인의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족수당 지급 및 세금 공제 부여를 거부하여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이다. 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보장 및 급여 체계의 일부로 가족수당 청구권을 창설하여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일반적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 추가적인 권리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47). 재판소는 특히 가족수당의 목적이 국내 거주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동일한 사회 내 가족 간 부담을 분담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므로, 이와 같은 “세대 간 계약”의 맥락에서,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은 통상적으로 장래에 그 부담을 분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ibid.*, §§ 52-53; 또한, 해외 입양 아동에 대한 특별 아동수당 지급 거부에 관한 *Santos Hansen v. Denmark* (dec.), 2010 참조).

164.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Muñoz Díaz v. Spain*, 2009 사건에서 로마족 공동체의 혼인을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시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조치에 대한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로마족 가족에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하고, 다자녀 가정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청구인과 여섯 자녀에서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청구인의 로마족 배우자가 19 년 이상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가 사실상 청구인을 배우자로 인정하면서도, 유족연금 수급권에 관한 판단에서는 로마족 혼인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비례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의 상황은,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혼인관계에 있다고 믿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비례성을 상실한 대우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 사건이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협약 제 14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62-71; 이와 대조하여, *Şerife Yiğit v. Turkey* [GC], 2010, §§ 83-88 참조).

165. 청구인의 자녀 중 막내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이 종료된 반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배우자(아내)는 계속해서 연금을 받은 *Beeler v. Switzerland* [GC],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특정 국가의 전통, 일반적인 사회 통념 또는 지배적인 사회적 태도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성별에 따른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그 차별이 여성에게 유리하든 남성에게 유리하든 마찬가지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고, 남편이 아내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전제(이른바 “남성 가장” 개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소는 이러한 과거의 “사실상 존재했던 성별 불평등”이 스위스 사회에서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문제 된 법률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나 본질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력과 남성의 가족생활에 모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재판소의 언급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내의 사망 후 딸들의 양육과 돌봄에 전념하였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연금이 종료된 당시 57 세였고, 오랜 기간 노동시장 밖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상황에 있는 여성보다 고용시장에 복귀하기 더 쉬울 이유가 없었고, 연금 지급 종료로 인한 영향이 비슷한 상황의 여성 유족 배우자보다 덜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성별을 이유로 한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대단히 강력한” 또는 “특별히 중대하고 설득력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제 8 조와 결합한 협약 제 14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10-116).

166. 또한, 유족연금 수급 자격 요건으로 파트너 중 한 명이 사망하기 2 년 전까지 동거관계를 공식화했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소급하여 적용된 결과, 청구인들의 연금 신청이 거부된 *Domenech Aradilla and Rodríguez González v. Spain*, 2023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청구인들의 파트너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 새로운 자격 요건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청구인들과 같은 처지인 사람들의 연금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상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상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청구인들은 생계 수단이 극히 제한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었던 유족연금 수급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면 법의 지배 원칙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09-113).

167. 한편, 우크라이나 내 국내이재민인 청구인에게 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한 특별 월간 수당의 지급이 중단된 *Shylina v. Ukraine*, 2024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지정된 국가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라는 법률상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것은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2-46).

C. 사회보장 및 고용 혜택

168. *Gaygusuz v. Austria*, 1996 사건은 국적을 이유로 실업 상태의 남성에게 긴급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이다. 재판소는 긴급지원금 수급권이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적용 대상인 금전적 권리로 해당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았고, 국적에 따른 대우의 차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 14 조와 결합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41 및 50; 또한, 유족 배우자(아내) 수당이 남편에게는 제공되지 않은 두 사건인 *Willis v. the United Kingdom*, 2002, §§ 36, 41-43 및 *Runkee and White v. the United Kingdom*, 2007, § 45 참조).

169. 남성과 여성의 국가 연금 수급 가능 연령이 달라서 산업재해 관련 사회보장 급여 수급 자격에 차이가 발생한 *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6 사건에서 재판소는 당시 여성이 처한 불합리한 경제적 지위를 시정하려던 조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로 인해 특별대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때까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마찬가지로, 해당 급여가 경제활동 기간 중 감소된 소득능력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연금제도와 수급 자격을 연계한 결정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협약 제 14 조 위반은 없었다(§§ 54-66; 이와 대조하여, 청구인의 국적을 이유로 농민 사회보장제도 가입이 거부된 *Luczak v. Poland*, 2007, §§ 49-60 참조).

170. 또한, *Čakarević v. Croatia*,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잘못 지급된 실업복지급여를 소급하여 환수하려는 명령에 대한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해당 급여를 정당한 수급권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특히 문제 된 급여가 기본적인 생계유지 지원 수단이었으며, 지급 당시 청구인이 본인의 수급 자격이 소급하여 문제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64-65). 재판소는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금전적으로 상당한 액수였고, 유일한 소득원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받은 급여는 모두 필수 생계비로 소비되었고,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오랜 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청구인의 전반적인 재정적·개인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오지급된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하도록 한 의무는 청구인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87-91; 또한, 유사한 취지에서, *Romeva v. North Macedonia*, 2019, §§ 66-79).

171. 재판소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할 때 협약 제 4 조도 살펴보았다. *Schuitmaker v. the Netherlands* (dec.), 2010 사건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인 청구인은 새로운 입법에 따라 급여 수급을 계속하려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직업에 종사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경우, 그러한 급여의 수급 자격 요건을 설정할 권한이 전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수급자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직업을 구하고 실제로 종사하려는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은 비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해당 입법은 수급자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거나 양심에 반하는 직업을 구하고 실제로 종사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은 더욱 정당화될 수 있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문제 된 조건이 협약 제 4 조제 2 항에서 금지하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 수행을 강요하는 것과는 동일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72. *Le Marrec c. France*, 2024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AF) 웹사이트에 접속한 결과 프랑스 외 지역에서 접속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이후 실시된 조사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는 조치(사기 방지)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및 범죄 예방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다고 판단하였다(§ 76). 재판소의 지적에 따르면,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이 해당 목적(소득 지원 자격 검증을 위하여 청구인의 프랑스 내 거주 확인)에 엄격히 한정되었다. 따라서, 복지급여 지급이라는 공공 행정 서비스의 맥락에서 불가피한 조치였고, 부당하거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 또는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수당금고 소속 직원만이 해당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청구인은 VPN 사용 경위를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여 잘못된 위치정보를 정정할 수도 있었다(§§ 81-83). 재판소는 이 조치가 청구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D. 연금

173.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사회보장 연금의 감액, 지급 정지 또는 중단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살펴보았다. 재판소의 지적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가 취약한 구성원과의 사회연대 원칙에 헌신한다는 표현이고, 연금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감소하는 소득능력을 보정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를 계속하거나 다시 시작한다면, 경제활동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득능력도 여전히 존재한다(*Fábián v. Hungary* [GC], 2017, § 70).

174. 재판소는 제한의 비례성을 심리하면서, 급여 상실의 정도, 선택 가능성의 존재 여부, 생계 수단 상실의 범위 같은 요소를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였다(*Fábián v. Hungary* [GC], 2017, § 73).

- *Moskal v. Poland*, 2009 사건: 중증 질환을 앓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조기퇴직연금의 중단 조치(§§ 67-76,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
- *Apostolakis v. Greece*, 2009 사건: 형사 유죄 판결을 받자, 연금을 자동으로 전액 박탈한 조치(§§ 39-43,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 이와 대조하여, 재판소가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Philippou v. Cyprus*, 2016, §§ 66-75 참조)

- *Klein v. Austria*, 2011 사건: 전문직(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자 평생 기여금을 납부했지만, 연금 수급권 전부를 상실하게 한 조치(§§ 52-58,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
- *Valkov and Others v. Bulgaria*, 2011 사건: 연금 지급 상한액을 설정한 조치(§§ 94-101,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 아님)
- *Stefanetti and Others v. Italy*, 2014 사건: 해외 근로 도중 낮아진 기여금 납부로 기존 노령연금의 약 2/3 를 상실하게 한 조치(§§ 59-67,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²⁷⁾)
- *Fábián v. Hungary* [GC], 2017 사건: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연금 수급자의 국가연금 지급을 정지한 조치(§§ 69-85,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 아님)
- *Savickis and Others v. Latvia* [GC], 2022 사건: 라트비아 영주권을 가진 비시민인 경우, 시민과는 달리, 라트비아 외 구소련 국가에서 일한 기간은 국가연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조치(§§ 215-221,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협약 제 14 조 위반 아님).

175. 재판소는 공적 권한을 가진 기관은 복지급여나 기타 재산권같이 개인에게 의미가 큰 사안을 다룰 때 최대한 신중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는 원칙인 선량한 관리(good governance) 원칙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다. 재판소는 사회적 정의의 중요성에 유의할 때, 행정당국이 자체 실수를 바로잡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지만, 그 시정 조치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라면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Moskal v. Poland*, 2009, §§ 72-73).

176. *Bernotas v. Lithuania*, 2024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실수로 다치게 한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회보장연금(노동능력 완전 상실)을 사회보장당국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에 대한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하였다. 첫째, 재판소는 국내 소송절차가 청구인에게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간 인과관계를 다룰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105). 또한, 국내 경제 현실이 변하면서 연금액을 조정 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지도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107). 재판소는 또한, 피해자의 노동능력 회복 여부, 청구인의 재정 상태, 상해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이미 손해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108-109).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당국이 청구인에게 월별 분할납부를

²⁷ 재판소는 유럽사회권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연금액 기준을 참고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62-64).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처한 점도 지적하였다(*ibid.*, § 111). 따라서,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 아니었다.

177. 나아가, 복지제도나 연금제도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권리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강조한 바에 따르면, 재판소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특정 청구인이나 그 외 유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사실관계나 사정이 아니라 해당 제도가 협약 제 14 조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62 및 이 조항에서 관련 판례 다수 참조). 재판소의 역할은 제도의 입법 자체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 간 불법적인 차별이 발생하는지 살피는 원칙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다(*ibid.*).

178. 해외 거주 연금 수급자에게 지수 연계 연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은 *Carson and Others*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영국 내 거주자와 법적으로 비교 가능한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연금 제도는 본질적으로 국내 거주 연금 수급자의 필요를 충족하려 설계되었다는 점과 국가별로 적용되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변수로 인해 해외 거주 수급자와 국내 거주 수급자 간 비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피청구국의 경제에 기여하지 않았고, 특히 연금 인상요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86; 해외 거주를 이유로 연금이 전면 중단된 *Pichkur v. Ukraine*, 2013 사건 §§ 50-51 과 비교 및 대조).

179. *Andrle v. the Czech Republic*,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자녀를 양육한 여성에게 연금 수급 가능 연령을 낮춰 적용한 제도는 -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 문제 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조처였고, 연금 수급 연령 평준화를 목표로 한 조치의 시기나 범위 역시 명백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 아니었다(§§ 54-61).

180. *Stummer v. Austria* [GC],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교도소 내 작업을 연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작업수형자도 일반 근로자와 법적으로 비교 가능한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작업의 성격이나 목적이 아니라, 고령자 생계 보장이라는 목적에 따라 노령 연금제도에 가입할 필요성에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95). 재판소는 대우의 차이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면서, 작업수형자가 노령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국가의 폭넓은 판단재량이 인정되는 형사정책 및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피청구국이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령연금제도보다 적절하다고 본 보험제도인 실업보험제도에 우선권을

부여한 것을 이유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 아니었다(§§ 101-111).

V. 주택²⁸

협약 제 8 조 -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공권력은 국가 안보, 공공의 안전, 국가의 경제적 복리를 위해, 무질서 또는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협약 제 14 조 - 차별 금지

“본 협약에서 명시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특히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국가 또는 사회계층, 소수민족과의 연계,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한 차별 없이 보장된다.”

제 1 의정서 제 1 조 - 재산권

- “1.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재산을 평화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공익을 위하여 그리고 법률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단 위의 규정은 국가가 일반의 이익에 따라 재산의 사용을 규제한다거나, 세금이나 기타의 부담금 또는 벌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법률을 시행할 권리를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협약 제 4 의정서 제 2 조 - 이동의 자유

- “1. 합법적으로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전의 자유와 주거선택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3. 공공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위생 및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에 필요한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4. 특정한 분야에서는 제 1 항에 규정된 권리들이 민주사회에서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A. 일반적 고려사항

1. 적용 범위

181. 협약 제 8 조는 주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Chapman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99; *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2020, § 114). 노숙인에게 주거를 제공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면 그 범위는 제한적이어야 한다(*O'Rourke v. UK* (dec.), 2001; *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2020, § 114). 다만, 재판소는 예외적인 사안이라면 협약 제 8 조에서 특히 취약한 개인에게 쉼터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Yordanova and Others*, 2012, § 130). 나아가 재판소는 다른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하여 이미 판결하였듯이(예를 들어, *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GC], 2005, § 55 참조), 계약국이 그러한 급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제 14 조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재판소는 노숙할 위기에 처한 경우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주거와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 8 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ah v. the United Kingdom*, 2011, § 40).

182. 협약 제 8 조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는 임대차 권리가 있는 사람의 파트너에게도 확장될 수 있다(*Prokopovich v. Russia*, 2004, § 37). *Karner v. Austria*, 2003 사건에서 재판소는, 동성 파트너가 사망한 후 그 동거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제 8 조와 결합된 제 14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41-43; 또한 *Kozak v. Poland*, 2010, § 99 참조).

183. 또한, 제 8 조는 특정 장소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Codona v. United Kingdom* (dec.), 2006; *Garib v. the Netherlands* [GC], 2017, § 141. 다만,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는 “제 4 의정서 제 2 조제 1 항(이동의 자유)의 핵심”이다).

184. 협약은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없으면 건강과 인간의 존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생활과 주거향유의 핵심을 침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 8 조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적극적 의무의 존재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영향을 받는 개인의 구체적 사정, 관련 법제, 해당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2020, § 116). 다만, 불법 거주지에 사는 로마족 공동체가 안전한 식수

²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 *유럽인권협약 제 8 조에 대한 해설서* ‘주거’ 중 ‘주택’ 및 *유럽인권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소유물’이라는 개념’ 중 ‘부동산 임대차 및 주거권’ 및 ‘구체적인 사안’ 중 ‘임대차 및 임대료 통제’ 참조.

및 위생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당국이 취한 조치가 불충분했다는 주장에 관한 *Hudorovič and Others*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들이 자신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재정 또는 그 외 장애물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더 그렇듯이, 국가가 청구인들의 거주지에 상수도를 공급할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은 청구인들에게 식수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청구인들이 사회보장급여도 수령하고 있었음을 고려하여,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청구인들의 취약한 처지를 고려하였으며, 협약 제 8 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49-159).

185. 또한 재판소는, 집행 가능한 최종 판결에 따라 주거를 배정받아 그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일정한 조건 하에 매입할 권리까지 받은 경우, 이는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Teteriny v. Russia*, 2005, §§ 48-50). 다만, 청구인의 긴급 주거 재배정을 명한 법원 명령이 집행되지 않은 것에 관한 *Tchokontio Happi v. France*, 2015 사건에서 재판소는 권리와 장래의 매입 선택권을 구별하였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은 사회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는 있었지만, 매입하는 것은 단지 선택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소는 청구인이 재산을 취득할 정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는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59-60). 이와 유사하지만 좀 더 일반적인 구별을, 구(舊)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 특별 보호를 받던 임대차와 관련하여 승계국들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사건에서 재판소가 제시한 바 있다(*Mag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2012, § 78).

2. 판단재량

186. 재판소는 주택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판단재량을 인정한다(*Connors v. the United Kingdom*, 2004, § 82; *Yordanova and Others v. Bulgaria*, 2012, § 118; *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2020, § 141). 국가 당국은 자국 사회와 그 필요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따른 공익이 무엇인지 국제 재판관보다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재판소는 입법부의 정책 선택에 “합리적 근거가 명백하게 결여”되어 있지 않는 한 대체로 이를 존중한다(*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6, § 52; *Bah v. the United Kingdom*, 2011, § 37). 이러한 입장은 특히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맥락에서 특히 두드러진다(*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2020, § 141; *Šaltinytė v. Lithuania*, 2021, §§ 64 및 77). 한편, 재판소는 협약 제 8 조가 개인의 정체성, 자기 결정권, 신체적·정신적 온전성, 타인과의 관계 유지 및 공동체 내에서 안정된 주거 확보 같은 핵심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택 관련 사안에서 제 8 조가 보장하는 권리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권리보다 판단재량의 폭이 더 좁다고 판결하였다(*Andrey Medvedev v. Russia*, 2016, § 53; *Gladysheva v. Russia*, 2011, § 93).

187. 재판소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주택 같은 급여를 배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는 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이민자의 다양한 범주를 구별하고, 특정 범주에 대해 사회주택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도 정당화될 수 있다(*Bah v. the United Kingdom*, 2011, § 49). *Bah* 사건에서는 이민 통제 대상인 미성년자를 사회주택 우선 배정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영국 내에서 제한된 사회주택 자원을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고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정할 때 그들의 이민 신분을 고려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대상이 된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판결하면서, 제 8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52; 또한, *L.F. v. the United Kingdom* (dec.), 2022, §§ 46-48).

188. 원칙적으로 판단재량의 범위는 넓지만, 재판소는 경제적·사회적 정책에 따른 조치가 차별 금지 원칙을 침해하지 않고, 비례성 요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4 조의 맥락에서, 재판소는 입법부의 정책 선택이 “합리적 근거가 명백하게 결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이를 존중할 수도 있는 경우를,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된 경과조치로 인해 대우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닌 상황에서, 특히 장애나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국가의 판단재량은 크게 축소되고,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하려면 “매우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J.D. and A. v. the United Kingdom*, 2019, §§ 88-89, 97 및 104).

189. 또한 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국가가 다수 인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려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로마족 집단 같이 취약하거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2020, § 142). 상황이 이러한 경우, 로마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협약 제 8 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Connors v. the United Kingdom*, 2004, §§ 84 및 94). 특히 노숙으로 이어지는 조치처럼 제 8 조 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그러할 수 있다(*ibid.*, §§ 85-86). 아울러 재판소는 국내 당국의 의무인 비례성 판단을 할 때 청구인들이 속한 사회집단의 특성과 그 집단의 필요를 고려해야 할 유관 요소로 보았다(*Yordanova and Others*, 2012, §§ 129 및 132-133; *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 142 및 147).

190. 이 분야에서 국가의 판단재량과 비례성 평가에 관한 유관 일반 원칙을 정리한 내용은 *Faulkner and McDonagh v. Ireland* (dec.), 2022 사건 §§ 94-98 참조.

B. 퇴거/주거 상실

191. 재판소는 판례에서,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토지 또는 재산의 점유를 회복하려는 당국의 조치는 일반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Connors v. the United Kingdom*, 2004, § 69; *McCann v. the United Kingdom*, 2008, § 48; *Yordanova and Others v. Bulgaria*, 2012, § 111).

192. 다만, 퇴거 조치는 국내법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에 비례해야 하고, 사건의 개별적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Orlić v. Croatia*, 2011, § 64; *Andrey Medvedev v. Russia*, 2016, § 54). 이러한 조치에 절차적 보호장치가 존재하는지는 해당 제한의 비례성을 판단할 때 재판소가 중시하는 요소이다(*Connors v. the United Kingdom*, 2004, §§ 83 및 92; *Faulkner and McDonagh v. Ireland* (dec.), 2022, §§ 101-102). 특히, 재판소는 제한 조치로 이어진 의사결정 절차가 공정하였고 협약 제 8 조가 보호하는 개인의 이익을 충분히 존중하였는지 심사해야 한다(*ibid.*; *Brežec v. Croatia*, 2013, §§ 48-50). 재판소는 국내 차원에서 필요한 비례성 판단이 있었는지 결정할 때, 절차 전체의 전반적인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다(협약 제 6 조에 근거한 유추 적용)(청구인이 초기 단계에서 법률 대리인 부재로 입은 불이익이 며칠 후 법률구조가 제공되어 즉각 해소되었다고 재판소가 판단한 *Faulkner and McDonagh v. Ireland* (dec.), 2022, § 103).

193. 또한, 재판소는 협약 제 8 조 따라, 주거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면, 국내법상 점유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원칙적으로 그 조치의 비례성이 독립적인 재판기관에 의해 심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였다(*McCann v. the United Kingdom*, 2008, §§ 50 및 53). 이 원칙은 국가 소유 또는 사회 소유의 주거에 관한 맥락에서 발전하였다(*F.J.M. v. the United Kingdom* (dec.), 2018, § 37 및 이 조항에서 관련 판례 다수 참고). 다만, 공공 임대인과 민간 임대인은 구별하므로, 이 원칙은 민간 개인 또는 기업이 점유 회복을 청구하는 사건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민간 부문 임대인과 거주자)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간 균형이 해당 협약상 권리 보호가 목적인 법률로 이미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ibid.*, §§ 41-46).

194. 국가 당국이 청구인에 대한 퇴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퇴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거나 이를 증명할 주장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재판소는 국가가 자산을 통제할 정당한 이익보다 청구인이 자신의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Bjedov v. Croatia*, 2012, §§ 70-71; *Yordanova and Others v. Bulgaria*, 2012, § 118). *Yordanova and Others* 사건은 로마족이 오랜 기간 정착해 온 거주지에서 대체 주거 대책 없이 계획된 퇴거 조치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재판소는 국가 당국이 청구인들의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특히 대체 거주지가 제공되지 않아 노숙 상태에 이를 위험이 있는데도 청구인을 퇴거시켜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퇴거 조치가 협약 제 8 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122-134; 또한, 점유계약에 따라 장기간 적법하게 거주하던 국가 소유 아파트에서 퇴거된 *Nafornița v. the Republic of Moldova*, 2024, §§ 41-42 참조).

195. 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공공주택이나 토지에서 세입자 또는 점유자의 퇴거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확립된 제 8 조의 원칙을, 자신의 주거를 상실하는 경우와 관련된 사건에도 유추 적용하면서, 이러한 제한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실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절차적 요소도 포함하므로 의사결정 절차가 제 8 조로 보호하는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였는지도 평가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Ivanova and Cherkeзов v. Bulgaria*, 2016, §§ 52-53). 건축법규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택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Ivanova and Cherkeзов*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해당 조치의 비례성을 적절히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철거는 제 8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국내 절차는 단지 건축물의 불법성 여부에만 집중하였을 뿐, 그 주택이 청구인들의 유일한 주거지라는 점이나 대체 주거지가 없다는 점 등 청구인들의 개인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56-62). 이처럼, 주거 철거와 관련된 사안에서 당국이 실시하는 심사의 범위가 이러한 수준에 이른다는 점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에 관한 *Simonova v. Bulgaria*, 2023 사건 § 48 에서도 확인되었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국내 당국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 노숙 상태에 처할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고, 적절한 대체 주거 마련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한 비례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 9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51-54).

196. 퇴거와 관련된 사건으로 피청구국에 적극적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재판소는 *Pibernik v. Croatia*, 2004 사건에서 국가 당국이 아파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내린 퇴거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협약 제 8 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64 및 70; 또한 *Cvijetić v. Croatia*, 2004, §§ 51-53 참조).

197. *Bilyavska v. Ukraine*, 2025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지 못하도록 한 청구인의 성인 자녀와 그 가족에 대한 퇴거 청구를 국내 법원이 기각한 사안을 다루었다.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유재산 분쟁을 판결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의 명백한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해관계 간의 균형을 평가하려는 시도도 없이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는 것이다(§§ 44-48). 또한, 제 8 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집으로 영구적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불만 사항이 해당 집이 청구인의 "집"임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55-56). 국내 재판은 분쟁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집에 다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노인 여성인 청구인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61-62).

C. 임대료 통제

198. 재판소는 주택 같은 영역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로서 계약국의 복지 및 경제 정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일종의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 영역에서는, 완전히 자유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통제해야 하는지 및 그 시기의 결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주택의 필요를 충족하려는 조치의 선택과 실행 시기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사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재판소는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시행할 때 입법부에 부여되는 판단재량이 넓은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고, 이러한 정책적 판단이 “합리적 근거가 명백하게 결여”된 경우가 아닌 한, 공익 또는 일반 이익에 관한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Hutten-Czapska v. Poland* [GC], 2006, §§ 165-66).

199. 임대인들이 제 1 의정서 제 1 조를 근거로 법정 임대료 인하 조치 도입에 이의를 제기한 *Mellacher and Others v. Austria*, 1989 사건에서 재판소는 오스트리아 입법자가 사회 정의에 따라 기존 임대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고, 법률에 따른 임대료 인하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임대인들에게 가해진 부담이 비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53-57).

200. 반대로, 폴란드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 도입된 엄격한 임대료 통제 제도로 불이익을 받은 임대인이 제기한 청구를 재판소가 심리한 *Hutten-Czapska v. Poland* [GC], 2006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해당 제도는 임대료 수준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 및 협상에서 자유로운 계약 의사 행사를 제한하고, 계약 해지 조건을 결정할 때도 임대인의 권리를 여러 방식으로 제한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판소는 문제 된 임대료 통제 제도가 임차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통제 임대료 체제에서 자유계약에 따른 임대료 체제로 점차 전환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수긍하였고,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사회권을 조화시키려면 수반되는 대단히 어려우면서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 역시 인정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피청구국은

청구인에게 비례성을 상실한 과도한 부담을 지워 양자 간 요구되는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78 및 223-225).

201. 재판소는 과거 정권 붕괴 후 계약국을 상대로 제기된 임대료 통제 관련 여러 사건에서도 유사한 사안을 살펴보고,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을 추가로 인정하였다(*Statileo v. Croatia*, 2014, §§ 140-145; *Bittó and Others v. Slovakia*, 2014, §§ 105-119). *Kasmi v. Albania*, 2020 사건에서, 청구인은 알바니아 공산 정권 붕괴 후 민영화 개혁 과정에서 가족 소유로 인정된 부동산을 회복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지만, 해당 부동산에는 노숙 위기에 처한 은퇴자 등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취약 계층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재판소는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에서 취약 계층에 적절한 가격으로 주거를 제공하려는 해당 법률의 목적이 정당함은 인정하였지만, 법률에 의해 강제된 임차 계약인 점, 청구인의 임대차 종료권을 보호할 적절한 절차적 수단이 부재한 점,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는 낮은 수준의 법정 임대료, 청구인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76 및 79-85).

202. *Berger-Krall and Others v. Slovenia*, 2014 사건에서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협약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선 사건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사건은 이전 체제 하에서 “특별 보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회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 이후 임대료가 인상되고 거주 안정성이 약화되어 제기한 청구였다. 재판소는 개혁의 결과로 임차인에게 제공되던 법적 보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점은 인정하였지만, 국가의 비국유화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입법적 선택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된 결과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간 적절한 균형을 취해야 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특히 임대차 계약이 무기한 유지되고 있었고, 임대료 인상 수준이 자유시장 임대료보다 낮았으며, 무엇보다도 소득 수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은 여전히 특별한 보호 대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주택 개혁에 따른 사회적·재정적 부담을 균형 있게 분담하도록 보장하였다고 보아,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5-212).

203. 또한, 정부가 노숙인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다세대 주택과 인접한 토지를 수용(收用)한 *Edwards v. Malta*, 2006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청구인인 소유자의 권리 향유에 제약이 가해졌으므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문제 된 수용 조치 및 임대료 통제가 추구하는, 임차인의 사회적 보호 확보와 노숙 방지 및 저소득 임차인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 주택 자원을 정당하게 배분하고 사용한다는 정당한 목적은 수긍하였다(§ 67). 다만, 재판소는 공동체의 일반적 이익과 청구인이 재산을 평화적으로

향유할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었는지 심사하면서, 청구인이 약 30년간 소유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였고, 보상으로 받은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에 비해 극히 낮았으며, 임차인의 선정이나 임대차 계약의 핵심 조건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타인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재정적 비용의 대부분을 떠맡게 되었고 그 결과 비례성을 상실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73-79).

204. *Lindheim and Others v. Norway*, 2012 사건에서는 주거용 또는 별장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임차인들에게 이전과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무기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문제가 되었다.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도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2002년 임대료 통제가 폐지되면서 다수의 임차인이 준비가 되기도 전에 지대(地代)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입법이 추구한 사회정책적 목적인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97-100). 다만, 재판소는 임대료 수준이 현저히 낮았고, 임대 연장이 무기한 가능하며, 임대료는 토지의 실제 가치가 아니라 소비자물가지수(CPI)에만 연동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임차인에게만 부여되었다는 점 등 다수의 요인을 고려할 때, 해당 입법 개정이 청구인들에게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이 되었다고 판결하였다(§§ 126-136; 이와 대조되는 후속 사례로, *Lindheim* 사건의 연장선상인 *The Karibu Foundation v. Norway*, 2022, §§ 75-94 참조).

205.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용도는 재판소가 임대료 통제 조치의 비례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임대 대상 부동산이 밴드 클럽에서 사용 중이던 *Bradshaw and Others v. Malta*,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시설이 사회주택 등과는 다르게 공익의 정도가 다른 여러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자유시장에 비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할 정당성이 없는 사회적·문화적 활동, 즉 상업적 성격을 띤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58 및 63-66).

D. 국가의 기타 통제 조치

206. *Garib v. the Netherlands* [GC],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정 도시 지구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택 허가를 받으려면 과거 6년간 현지에 거주했거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법에 대해, 제 4 의정서 제 2 조에 따른 청구를 심리하였다. 해당 입법의 목적은, 로테르담의 일부 빈곤한 도심 지역의 황폐화 및 낙인을 방지하고, 사회복지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착을 장려하여 지역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재판소는 이 사건의 사회적·경제적 맥락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해당 분야에 개입하기로 한 결정 자체와

일단 개입한 이후 상충하는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규칙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폭넓은 판단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더 구체적으로는, 대도시 개발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라면, 도시계획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의 판단재량이 넓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38-139).

207. 재판소는, 주택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 신청이 거부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입법 체재(體裁)와 청구인의 개별적 사정을 함께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시점에서 당국이 채택한 정책적 선택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해당 개인에게 비례성이 상실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관련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신규 거주자 중 취업자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반대의 증거가 존재하였다(*Garib v. the Netherlands* [GC], 2017, §§ 147-148). 또한 재판소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현지에 충분한 대체 주택을 제공해야 하고, 지정 구역은 4년마다 재검토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의 실효성과 실질적 영향은 관련 장관이 5년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곤란한 개별 사정에 따른 예외 조항도 포함되는 등 청구인 같은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이 적절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주는 여러 보호장치가 입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또한, 협약 제 6 조에 부합하는 이심제(二審制) 사법심사 절차의 보장은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되었다. 재판소는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청구국은 판단재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150-157).

208. 나아가 재판소는, 입법이 추구하는 공익과 청구인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판단할 때, 주택 허가가 거부되어 발생한 청구인의 개인적 상황이 특별히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어떠한 실질적인 곤란을 겪었다는 정황이 없고, 단순한 개인 선호를 제외하면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기를 거부하였으며, 실제로는 6년 거주 요건이 만료되기 직전에 다른 자치단체의 정부 보조 주택으로 이주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택 허가 거부로 인한 영향이, 문제 된 조치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우선하여야 할 정도로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Garib v. the Netherlands* [GC], 2017, §§ 160-165). 재판소는 나아가, 아무런 근거 없는 개인적 선호가 받아들여진다면, 국내 당국과 재판소는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관계를 다뤄볼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고, 공적 의사결정이 무력화되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판단재량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66).

E. 주택급여

209. 주택급여에 관한 재판소 판례는 주로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4 조 하에 형성되었다. *Vrountou v. Cyprus*, 2015 사건에서 청구인은 남성이 아닌 여성 이재민의 자녀라는 이유로 난민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재판소는, 이러한 대우의 차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 사유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관련 조항들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76). 재판소는 여러 다른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난민카드 요건만 없었더라면 청구인에게 국내법상 주택 지원을 받을 권리가 생겼으리라는 점에서, 주택급여가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64-66).

210.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구인들을 고려한 예외 조치를 두지 않은 채 주택급여를 감액한 *J.D. and A. v. the United Kingdom*,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14 조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의무인 처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다르면 차이를 두어 대우해야 할 의무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였다. 두 청구인 모두 사회주택 임차인이었고,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주택급여가 공공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감액되자, 제 1 청구인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전일제로 돌보고 있고, 제 2 청구인은 심각한 가정폭력 상황이나 그럴 위험이 있을 때 보호하는 '보호 주거 제도(sanctuary scheme)'에 따라 주거를 제공받는다라는 각자의 개인 사정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4 조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였다.

211.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처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다른데도 다른 주택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문제 된 조치로 인해 현저하게 불이익을 얻은 점을 확인한 후, 차이 없이 대우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차별이라 주장하는 근거가 장애와 성별이라는 점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해당 조치를 정당화하려면 대단히 중대한 사유가 필요하였다(*J.D. and A. v. the United Kingdom*, 2019, §§ 96-97).

212. 제 1 청구인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이사하게 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고 매우 바람직하지 않기는 하지만, 크기가 작아지고 적절히 개조된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재량적 주택급여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여러 요소가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는 수단이었으며, 대우의 차이를 두는 정당한 사유일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수긍하였다(§§ 101-102). 다만, 제 2 청구인에 대해서는, 주택급여 감액의 목적(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보호 주거 제도'의 목적(청구인이 안전을 위해 현 거주지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목적)과 충돌하고 있는데도, 한 가지 정당한 목적을 다른

목적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처럼 규모가 작고 쉽게 특정될 수 있는 집단에 개정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차별적 조치였다(*J.D. and A. v. the United Kingdom*, 2019, §§ 103–105).

213. 또한, 청구인의 나이를 이유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저소득층 중 “청년 부부로 이루어진 가족”에 제공되는 주택 보조금 지급이 거부된 *Šaltinytė v. Lithuan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민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젊은 세대 출산 장려를 겨냥한 공공 정책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수긍하였다.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국가 당국이 우려할 만한 정당한 문제로, 각국은 권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인구 통계학적 추세를 바꾸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74–75).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청년으로 구성된 가족에 사회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결정은, 청년층의 재정 상태가 타국으로의 이민 여부, 출산 여부나 시기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합리적 근거가 명백하게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국가의 인구통계 및 통계 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79–83).

VI. 특정 취약 집단

협약 제 3 조

“누구도 고문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협약 제 8 조 -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공권력은 국가 안보, 공공의 안전, 국가의 경제적 복리를 위해, 무질서 또는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협약 제 14 조 - 차별 금지

“본 협약에서 명시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특히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국가 또는 사회계층, 소수민족과의 연계,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한 차별 없이 보장된다.”

제 1 의정서 제 1 조 - 재산권

1.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재산을 평화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공익을 위하여 그리고 법률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단 위의 규정은 국가가 일반의 이익에 따라 재산의 사용을 규제한다거나, 세금이나 기타의 부담금 또는 벌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법률을 시행할 권리를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제 1 의정서 제 2 조 - 교육을 받을 권리

“어느 누구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교육 및 교수와 관련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가 자기의 종교적 및 철학적 신념에 일치하는 교육 및 교수를 확보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4 의정서 제 4 조 -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의 금지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은 금지된다.”

214. 이 장에서는 이주민·망명신청자, 장애인, 로마족을 비롯하여 특정 취약집단과 관련된 재판소의 판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측면을 살펴본다.

A. 이주자/망명신청자²⁹

215. 재판소는 이주민·망명신청자의 협약상 권리를 심사할 때, 불안정한 상황과 과거의 경험을 고려하여 이들이 처한 취약한 지위에 특별히 주의한다(*M.S.S. v. Belgium and Greece* [GC], 2011, §§ 232 및 251; *B.G. and Others v. France*, 2020, § 78). 아동이 관련된 경우라면 특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 재판소는 아동의 경우 동반 여부를 떠나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취약성은 아동의 비정규이주자 지위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보다 우선한다고 언급하였다(*N.T.P. and Others v. France*, 2018, § 44; *Khan v. France*, 2019, §§ 73-74 및 §§ 92-93; *B.G. and Others v. France*, 2020, § 79).

216. 재판소는 협약 제 3 조에 따라 국가가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거를 제공하거나 이주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재정 지원을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밝혔지만, 청구인이 국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는 심각한 결핍 또는 궁핍을 겪는데도 국가가 공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한 경우에는 제 3 조 국가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M.S.S. v. Belgium and Greece* [GC], 2011, §§ 249 및 253; *Tarakhel v. Switzerland* [GC], 2014, §§ 95 및 98). *M.S.S. v. Belgium and Greece* [GC],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생존 수단이 전무한 채 수개월간 극심한 빈곤 상태로 거리에서 생활하며(식사나 위생 등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공격이나 절도를 당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망명신청자의 제 3 조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청구인을 망명신청자라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과, 수개월간 그가 처한 특히 심각한 상황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제 3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은 결과 공포, 불안, 열등감 등의 감정을 느끼고 절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활 조건은 청구인이 장기간 개선 가능성 없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 더해 협약 제 3 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심각성의 기준선에 도달하였다(*M.S.S. v. Belgium and Greece* [GC], 2011, §§ 263-264).

217. 이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 *N.H. and Others v. France*, 2020 사건에서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법률상 제공되도록 규정된 지원을 망명신청 기간 받지 못한 망명신청자들이

²⁹ 또한, [유럽인권협약 주제별 해설서 - 이민](#) 참조.

수개월간 거리에서 노숙하게 되었고,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 생존 수단이 전무하고, 지속적으로 공격이나 절도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재판소는 당국이 청구인들에 대한 국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처한 불안정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들은 당국이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으므로 협약 제 3 조의 목적상 심각성의 기준선을 초과하였다(§§ 165-186). 반면, 청구인이 수개월간 천막에서 생활하였으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망명신청자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와 재정 지원을 받은 점이 고려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 3 조의 기준선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187).

218. 또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망명신청자 부부와 미성년 자녀 6 명이 이탈리아로 되거될 예정이었던 *Tarakhel v. Switzerland* [GC], 2014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수용국에서 적절한 시설과 여건(적정한 주거, 식사, 의료 등)하에 특히 아동의 연령에 맞는 조건에서 보호되고 가족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국이 추방한 것은 제 3 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120-122).

219. 재판소는 아동이 관련된 여러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 *Mubilanzila Mayeka and Kaniki Mitunga v. Belgium*, 2006 사건: 성인 대상으로 설계되어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시설에 수용된 5 세 비동반 아동이 이후 상황에 적절한 조치나 예방책 없이 강제되거된 사안(§§ 50-59 및 66-71)
- *Muskhadzhiyeva and Others v. Belgium*, 2010 사건: 당시 각각 생후 7 개월, 3 세 6 개월, 5 세, 7 세였던 미성년 비호신청자 네 명이 부모와 함께 아동 수용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구금되어, 특히 심리적 건강이 악화된 사안(§§ 59-63)
- *Popov v. France*, 2012 사건: 추방을 앞두고 부모와 함께 15 일간 구금된 미성년 아동들이 과도한 경찰력이 배치된 성인 대상 구금시설에 수용되었고, 연령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부모의 심리적 고통과 결합된 상황이 아동의 연령에 명백히 부적절했던 사안(§§ 91-103)
- *A.B. and Others v. France*, 2016 사건: 부모를 동반하기는 하였지만 4 세 아동이 18 일간 구금되어 대단히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무장한 정복 경찰이 뒤섞인 상태로 사법 및 행정 절차 출석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도 아동을 혼자 둘 수 없어 동반해야 했던 사안(§§ 112-115);
- *Khan v. France*, 2019 사건: 수개월간 비동반 외국인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아동에게 명백히 부적절한 환경인 판자촌에서 생활하였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구인을 보호하는 사법적 보호 명령을 당국이 이행하지 않은 사안(§§ 81-95)

- *Moustahi v. France*, 2020 사건: 비동반 미성년자들이 해상에서 차단되어 아무 관련 없는 성인과 임의로 조합하여 구금되고 아무런 예방책 없이 제 3 국으로 강제퇴거된 사안(§§ 58-70)
- *M.A. v. Italy*, 2023 사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비동반 미성년 비호신청자가 약 8 개월 동안 아동에 맞는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성인용 수용소에 배치된 사안(§§ 41-48).

220. *Moustahi v. France*, 2020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비동반 미성년자의 구금 및 추방과 관련하여 제 5 조 및 협약 제 4 의정서 제 4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당시 각각 5 세와 3 세였던 아동들이 가족 구성원이나 보호할 책임 있는 성인 없이 홀로 상황을 감당해야 했다는 점에서 연령에 기인한 아동의 현저한 취약성을 강조하였다(§§ 91-94; §§ 103-104; 및 §§ 133-137). 또한, 재판소는, 비동반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이 구금된 상태에서 아버지와 재회하거나 면회하는 것을 당국이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아동의 구금이 위법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없는 성인과 임의로 조합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협약 제 8 조 위반도 인정하였다(§§ 113-115; 또한, 이주 아동의 구금 상황에서 제 8 조 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관한 *Popov v. France*, 2012, §§ 140-148 참조).

221. 다만, 재판소가 제 3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른 사건도 있다.

- *N.T.P. and Others v. France*, 2018 사건: 청구인들(어머니와 세 명의 어린 자녀)이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보호시설에서 야간 숙소를 제공받았고, 음식과 의료 지원을 받았으며, 자녀들이 학교에 다녔던 사안(§§ 45-49)
- *B.G. and Others v. France*, 2020 사건: 청구인들(미성년 자녀 동반 가족들)이 한때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촌에서 생활하였으나, 당국이 자녀를 대상으로 의료 지원 및 학교 교육을 보장하는 등 물질적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 조치하였고, 이후 아파트로 배정한 사안(§§ 87-89).

B. 장애인³⁰

222. 재판소는 협약의 여러 조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여러 사건도 살펴보았다. 재판소는 장애인이 역사적으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어 사회에서 배제되고 말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취약한 집단에 속한다고 분류하였다. 이러한 편견은, 장애인의 역량과

³⁰ 또한, *유럽인권협약 제 14 조에 대한 해설서* '차별의 사유' 중 '건강 및 장애', *유럽인권협약 제 8 조에 대한 해설서* '사생활' 중 '장애 문제' 참조.

욕구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법적 고정관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 참여와 통합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판단재량의 폭은 좁아야 하며, 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대단히 중대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Glor v. Switzerland*, 2009, § 84; *Guberina v. Croatia*, 2016, § 73).

1. 특정 구역, 건물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223. 재판소는,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모든 경우에 협약 제 8 조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접근 불가능이 개인의 자기발전권 또는 타인 및 외부 세계와 관계를 형성·발전시킬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가가 해당 건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Zehnalova and Zehnal v. the Czech Republic* (dec.), 2002; *Farcaş v. Romania* (dec.), 2010, § 68; *Arnar Helgi Lárusson v. Iceland*, 2022, §§ 44-46).

224. 장애인이 사유 해변에 접근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권리가 지나치게 넓고 범위가 확실하지 않은 대인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개인 소유 해수욕장의 부작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와 청구인의 사생활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제 8 조는 적용할 수 없었다(*Botta v. Italy*, 1998, § 35).

225. 또한, 장애인이 특정 건물과 서비스로 접근할 수 없게 제한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8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협약의 물적 관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 공공건물과 그 외 일반에 개방된 건물에 접근하는 문제와 관련된 *Zehnalova and Zehnal v. the Czech Republic* (dec.), 2002 사건에서, 재판소는 문제된 여러 건물에 대한 접근 제한과 청구인의 사생활상 특별한 필요 사이에 별다른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특히 청구인이 문제 삼은 건물의 수가 매우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해당 건물을 청구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및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와 청구인의 사생활 사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관련성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제 8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226. 당국이 특정한 공공건물 및 대중교통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Farcaş v. Romania* (dec.), 2010 사건에서 재판소는 유사한 근거에 따라 제 8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국가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특히 장애인의 사회·경제·문화생활 통합을 장려하고, 공공의 삶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장애인이 공공을 위해 마련된 건물에

접근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점도 고려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던 도시의 상황이 점차 개선되었음을 지적하였다(§§ 68-71).

227. *Glaisen v. Switzerland* (dec.),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추지 않은 사설 영화관에 하반신마비 청구인이 입장하지 못하여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영화관에서는 상영되지 않던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던 상황에 관한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사회적·가족적 상황을 고려하고, 영화 관람이 단순한 영화 시청을 넘어 타인과의 교류를 포함하는 사회적 활동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제 8 조가 특정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특정 영화관에 접근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특히, 재판소는 청구인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 통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영화관이 인근에 여럿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8-49). 따라서, 특정 영화를 보기 위해 특정 영화관에 들어가는 것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청구인의 자기발전권 또는 타인 및 외부 세계와 관계를 형성·발전시킬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0).

228. 다만, 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여러 사건과 달리, 휠체어 사용자인 청구인이 거주하는 도시 내 공공건물 두 곳(예술·문화센터)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실패한 *Arnar Helgi Lárusson v. Iceland*, 2022 사건에서는 다르게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휠체어 접근성 부족 문제가 제 8 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가 보기에 청구인은 공공 소유이거나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물 두 곳을 특정하여 명확히 지목하였고, 그곳에 접근할 수 없어서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문화행사, 사교 행사와 모임 등에 상당 부분 참여하지 못하였다. 재판소는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고 공동체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유럽 및 국제 기준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청구인의 자기발전권과 외부 세계와 관계를 형성·발전시킬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제 8 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4-46). 한편, 본안 판단에서 재판소는, 국가 당국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였고, 특히 교육 및 체육시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해 온 점을 들어, 그러한 조치가 임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기에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63-65).

229. 이와 달리, 일부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8 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는 않았다. *Mótka v. Poland* (dec.), 2006 사건에서는 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보조를 받지 못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다른 사유로 각하하면서 제 8 조의 적용 여부에 대해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현지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하고 시민의 의무를 이행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점, 즉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발전을 도모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 8 조와의 관련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³¹ *Farcaș v. Romania* (dec.), 2010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건축적 장벽으로 인해 관할 행정청이나 법원 건물에 접근할 수 없어 고용주 및 행정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소는 그러한 결정이 청구인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제 8 조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62-63). 청구인의 장애에 맞게 조정된 화장실이 직장에 없었던 *Bayrakci v. Turkey*, 2013 사건에서 재판소는 화장실 부재가 청구인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또한, 정상적으로 활동하며 생활하려던 청구인이 장애에 맞는 화장실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자율성을 훼손하고 사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굴욕감과 고통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요청한 여러 조치와 사생활 간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사정에서는 제 8 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26-27).

230. 또한 재판소는 *Farcaș v. Romania* (dec.), 2010 사건(앞 단락 참조)에서 법원 건물과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권리침해 주장을 제 6 조제 1 항(재판청구권) 및 제 34 조(개인청원권)에 따라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장애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제 6 조제 1 항의 의미에서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제 6 조제 1 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47-48). 또한 재판소는, 만약 청구인이 국내 구제절차를 경로할 수 없었거나, 국내 법정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없었거나, 재판소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었다면, 제 34 조 또한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국가는 제 34 조에 따라 일정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었다 (§ 49). 다만, 재판소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소에 청구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 특히 이를 위한 우편 서비스나 중개인의 활용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개인청원권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저해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 50-54).

2. 장애급여/조세 감면

231. 재판소는 장애급여의 특수한 성격과 특히 해당 급여가 청구인의 유일한 소득원이거나 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등 수급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각별히 유의하였다

³¹ 재판소는 “유관 국내 및 국제법” 항목에서, 정치 및 공적 생활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각료위원회 권고안 제 R(92)6 호 및 Rec(2006)5 호, 의회 회의 권고안 제 1185 호(1992), 유럽사회헌장(개정) 제 15 조 등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여러 문서를 인용하였다.

(*Bélané Nagy v. Hungary* [GC], 2016, § 123; *Kjartan Ásmundsson v. Iceland*, 2004, § 44).

232. *Bélané Nagy v. Hungary* [GC],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법률 개정으로 새로운 수급 요건이 도입되면서 청구인의 장애급여 지급이 중단된 사안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조치가 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공적 재정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어떤 급여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전면적인 권리 박탈에 처한 것으로 보아, 추구된 목적과 적용된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청구인이 생계를 유지할 다른 유의미한 소득이 없었고, 유급 노동에 종사하는 데 명백한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이라는 취약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23-126).

233. 마찬가지로, 법 개정 이후 장애급여가 전면 중단된 *Kjartan Ásmundsson v. Iceland*, 2004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20 년 동안 해당 급여를 정기적으로 수령하였고, 월 총소득의 3 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급여의 전면 박탈은 청구인에게 특히 가혹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44). 또한 재판소는, 연금기금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총 689 명의 장애연금 수급자 중 대부분이 법 개정 이후에도 종전 수준의 급여를 계속 수령한 반면, 청구인을 포함한 54 명만이 급여 전면 박탈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조치를 감내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러한 목적과 쉽게 조화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은 한 개인으로서 과도하고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을 지게 되었으므로 제 1 의정서 제 1 조(재산권) 위반이었다(§§ 43-45).

234. 또한, *Mocie v. France*, 2003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군인 상이연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진행된 절차가 과도하게 장기화되었다는 권리침해 주장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상이연금이 청구인의 주요 소득원이었고, 해당 절차는 건강 상태 악화를 반영하여 연금을 증액받기 위한 실질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안으로서 당국의 특별한 신속성과 주의가 요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약 제 6 조제 1 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22).

235. 재판소는 협약 제 14 조 차별 금지에 따른 장애급여 관련 다른 여러 청구도 심리하였다.

- *Koua Poirrez v. France*, 2003 사건: 신체장애가 있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이유로 장애급여 지급을 거부한 사안(§§ 47-50;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
- *Di Trizio v. Switzerland*, 2016 사건: 장애급여 산정 방식 때문에 출산 후 시간제 근무를 선택한 청구인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안(§§ 88-104; 제 8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

- *Belli and Arquier–Martinez v. Switzerland*, 2018 사건: 청각장애와 중증 인지장애가 있는 제 1 청구인(딸)과 딸을 평생 돌봐온 보호자이자 법정후견인인 제 2 청구인(어머니)이 해외 거주 중이라는 이유로 비기여형 장애급여 지급이 중단된 사안 (§§ 95–113; 제 8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 아님)
- *Popović and Others v. Serbia*, 2020 사건: 정확하게 동일한 하반신마비 장애가 있어도 민간인 장애급여 수급자들은 군인 수급자로 분류된 사람들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았다는 차별 대우 주장에 관한 사안 (§§ 74–80;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 아님)

236. 장애로 인한 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Glor v. Switzerland*, 2009 사건에서, 청구인이 당뇨병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과세 당국은 청구인의 장애를 경미한 것으로 간주하여 병역면제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자 제기한 청구를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제 8 조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질병이라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병역에 부적합해졌지만 과세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세금은 명백히 제 8 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재판소는, 국내 당국이 공공의 이익 보호와 청구인의 협약상 권리와 자유 간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특히 청구인이 병역 복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 부과된 세금이 청구인의 소득 수준에 비춰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는 점, 청구인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적 병역복무제도(예: 신체적 부담이 덜한 특별 근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제 8 조와 결합한 협약 제 14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 90–98; 또한 *Ryser v. Switzerland*, 2021, § 28 및 §§ 55–63 참조).

237. 또한, 장애에 적합하게 조정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세금 감면 자격 여부에 관한 *Guberina v. Croatia*,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4 조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가 있는 자녀의 주택 및 접근성 욕구를 고려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가족 상황이 중증 복합 장애를 가진 아들의 출생으로 크게 변화하였다는 점과 이들이 거주하던 주택 환경(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건물)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주거 조건은 아동의 이동성을 심각하게 제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적 발달과 잠재력 실현 능력을 저해하고, 또래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및 교육·문화·사회 활동에 충분할 정도로 참여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하였다 (§§ 80–82). 이어 재판소는, 대우의 차이가 발생해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으면서 그 근거로 관할 국내 당국이 이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된 여러 원칙(정당한 편의 제공, 접근성,

장애인이 사회 전 영역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 차별 금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²(§§ 92-93).

3. 교육³³

238. 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행사에 있어 보편성과 차별 금지라는 근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포용적 교육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이러한 기본 원칙 보장에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포용적 교육은 의심할 여지없이 국가의 국제적 책임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Enver Şahin v. Turkey*, 2018, § 55; *G.L. v. Italy*, 2020, § 53).

239.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Çam v. Turkey*, 2016, §§ 65-67; *Enver Şahin v. Turkey*, 2018, § 60; *G.L. v. Italy*, 2020, § 62).³⁴ 교육 영역에서 재판소는, “정당한 편의 제공”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교 건물의 건축적 접근성, 교사 훈련, 교육과정 조정, 적절한 교육 시설 제공처럼 물리적이거나 비물리적이거나 교육적이거나 조직적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편의 제공의 정의와 구체적인 범위는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아니라 국가 당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다(*Çam v. Turkey*, 2016, § 66; *Enver Şahin v. Turkey*, 2018, § 61; *G.L. v. Italy*, 2020, § 63). 그렇다고는 해도 재판소는 국가 당국이 자폐 아동 등 매우 취약한 집단에 그들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특히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anlısoy v. Turkey* (dec.), 2016, § 61).

240. *Çam v. Turkey*,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시각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적절한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튀르키예 음악 아카데미 입학을 거부당한 사안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관할 국내 당국이 어느 단계에서도 청구인의 욕구를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가 청구인의 음악 교육 접근에 어떠한 방해가 되었는지를 설명하지도 않았고, 시각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리적 조정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재판소는 청구인이 단지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음악 아카데미에서 학습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협약 제 14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68-69).

³² 재판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내 여러 유관 조항과 장애인권리위원회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해석·관행에 기초한 여러 원칙을 참고하였다(§§ 34-37).

³³ *유럽인권협약 제 1 의정서 제 2 조에 대한 해설서* ‘교육을 받을 권리’ 중 ‘장애인’ 참조.

³⁴ 재판소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명시된 요건에 비추어 제 14 조를 해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241. 또한, *Enver Şahin v. Turkey*,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장애가 있는 대학생 청구인이 교육시설의 접근성 확보에 필요한 개조 및 공사 시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안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교육 당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오직 인적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그쳤고, 청구인의 욕구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그 대안조차 청구인의 안전, 존엄성, 자율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2 조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되는 제 8 조 상 개인적 자율성 개념에 근거하여, 제시된 지원 조치는 가능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청구인의 욕구를 무시한 것이므로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62-65). 이어지는 사법적 대응 역시, 청구인의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비례성이 결여되거나 부당한 부담을 국가 당국에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과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66-67). 이에 따라 재판소는, 청구인이 다른 학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당국이 다하지 않았으며, 결국 상충하는 이해관계 간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제 1 의정서 제 2 조와 결합한 협약 제 14 조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68).

242. 재판소는 비언어성 자폐가 있는 아동이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특수 지원을 재정 부족으로 제공받지 못하게 되어 비장애 아동과 동등한 조건에서 초등학교에 계속 다니지 못하게 된 *G.L. v. Italy*, 2020 사건 §§ 70-72 에서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장애 아동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 간 교육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명목 아래 전체 교육 제공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국가 당국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소는, 예산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에게 동일해야 한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사회적으로 배제될 위험을 피하고자 자율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고 학습·사회생활·학교 통합을 개선하는 특수 지원의 대상이 되어 했었다(§§ 68-69).³⁵ 또한 재판소는, 초등교육은 아동 교육과 사회 통합의 기초이며 아동이 공동체 생활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당한 차별이 초등교육의 맥락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중대하다고 보았다(§ 71).

³⁵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국가는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공동체 생활 참여를 전면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및 이동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 보조수단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럽사회헌장(개정) 제 15 조와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 24 조를 인용하였다.

C. 로마족

243. 주택에서 퇴거된 여러 사건(“주택” 참조)에서 확인되듯, 재판소는 로마족의 권리를 보호할 때 그들의 취약하고 불리한 지위를 국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고려는 상황에 따라 협약상 적극적 의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재판소는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로마족은 특수한 형태의 불리하고 취약한 소수집단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특별 보호 요건이 교육 영역으로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82; *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2010, § 147). 국가는 로마족이 사회적·교육적으로 통합되도록 조치하면서 불리한 집단의 구성원인 로마족의 특수한 욕구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205–207; *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2010, §§ 180–182).

244. 재판소 로마족 아동의 교육권과 관련된 다수의 사건에서 제 1 의정서 제 2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가 살펴본 쟁점으로는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많은 로마족 아동을, 정신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학교에 배정한 경우(*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Horváth and Kiss v. Hungary*, 2013), 로마족으로만 구성된 학급에 배정한 경우(*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2010), 로마족 전용 학교에 배정한 경우(*Lavida and Others v. Greece*, 2013) 또는 특수 학급에 배정한 경우(*Salay v. Slovakia*, 2025) 및 본교 건물의 별관에 마련된 특수 교실로 배정하기 전에는 학교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경우(*Sampanis and Others v. Greece*, 2008) 등이 있다. 재판소는 이러한 모든 사건에서, 의도적이지는 않았더라도 로마족 아동이 경험한 차별적 대우는 일종의 간접 차별의 형태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245. 재판소는 로마족의 특수한 욕구를 교육 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로마족 공동체 내의 혼인(전통 방식에 따른 혼인)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Muñoz Díaz v. Spain*, 2009 사건에서 재판소는 로마족의 취약한 지위를 고려하여 관련 규제 체계나 개별 사안을 결정할 때 로마족의 욕구와 독특한 생활 방식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1).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 (“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협약 제 44 조의 의미에 따라 최종이 아닌 소재판부 판결은 아래 목록에서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 44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재판부 판결은 (a) 당사자들이 대재판부에 회부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b) 대재판부로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c) 대재판부 패널이 제 43 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확정”됩니다. 대재판부 패널이 회부 요청을 승인하면, 소재판부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고, 이어지는 대재판부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ies), 위원회 판례(결정 및 보고서),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또는 둘 중 하나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 는 다수의 주요 판례를 30 가지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및 제 3 자가 작성한 100 여 개 온라인 판례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합니다. 인용된 사건에 대한 언어별 번역본은 모두 해당 사건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HUDOC* 데이터베이스에서 ‘번역본(Language versions)’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A.B. and Others v. France, no. 11593/12, 12 July 2016

A, B and C v. Ireland [GC], no. 25579/05, ECHR 2010

A.K. v. Latvia, no. 33011/08, 24 June 2014

Advisory opinion concerning the recognition in domestic law of a legal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a child born through a gestational surrogacy arrangement abroad and the intended mother [GC], request no. P16-2018-001, French Court of Cassation, 10 April 2019

Airey v. Ireland, 9 October 1979, Series A no. 32

Aizpurua Ortiz and Others v. Spain, no. 42430/05, 2 February 2010

Albanese v. Italy, no. 77924/01, 23 March 2006

Aldeguer Tomás v. Spain, no. 35214/09, 14 June 2016
Alexandridis v. Greece, no. 19516/06, 21 February 2008
Andrejeva v. Latvia [GC], no. 55707/00, ECHR 2009
Andrie v. the Czech Republic, no. 6268/08, 17 February 2011
Andrey Medvedev v. Russia, no. 75737/13, 13 September 2016
Apostolakis v. Greece, no. 39574/07, 22 October 2009
Arjocu v. Romania, no. 56630/22, 6 May 2025
Arnar Helgi Lárusson v. Iceland, no. 23077/19, 31 May 2022
Associated Society of Locomotive Engineers and Firemen (ASLEF) v. the United Kingdom, no. 11002/05, 27 February 2007
Association of Civil Servants and Union for Collective Bargaining and Others v. Germany, nos. 815/18 and 4 others, 5 July 2022

—B—

B.G. and Others v. France, no. 63141/13, 10 September 2020
B.R. v. Switzerland, no. 2933/23, 8 July 2025
Bah v. the United Kingdom, no. 56328/07, ECHR 2011
Baka v. Hungary [GC], no. 20261/12, 23 June 2016
Bariş and Others v. Turkey (dec.), no. 66828/16 and others, 14 December 2021
Bayrakci v. Turkey, no. 2643/09, 5 February 2013
Bélané Nagy v. Hungary [GC], no. 53080/13, 13 December 2016
Beeler v. Switzerland [GC], no. 78630/12, 11 October 2022
Belli and Arquier-Martinez v. Switzerland, no. 65550/13, 11 December 2018
Berger-Krall and Others v. Slovenia, no. 14717/04, 12 June 2014
Berisha v. Switzerland (dec.), no. 4723/13, 24 January 2023
Bernotas v. Lithuania, no. 59065/21, 30 January 2024
Bielau v. Austria, no. 20007/22, 27 August 2024
Bilyavska v. Ukraine, no. 84568/17, 27 March 2025
Bittó and Others v. Slovakia, no. 30255/09, 28 January 2014
Biriuk v. Lithuania, no. 23373/03, 25 November 2008
Bjedov v. Croatia, no. 42150/09, 29 May 2012
Blokhin v. Russia [GC], no. 47152/06, 23 March 2016
Botta v. Italy, 24 Februar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
Budimir v. Croatia, no. 44691/14, 16 December 2021
Budina v. Russia (dec.), no. 45603/05, 18 June 2009
Burdov v. Russia, no. 59498/00, ECHR 2002-III
Bradshaw and Others v. Malta, no. 37121/15, 23 October 2018
Brazauskienė v. Lithuania (dec.), no. 7120/17, 5 December 2023
Brežec v. Croatia, no. 7177/10, 18 July 2013
Brincat and Others v. Malta, nos. 60908/11 and 4 others, 24 July 2014

—C—

C.N. and v. v. France, no. 67724/09, 11 October 2012
C.C. v. Spain, no. 1425/06, 6 October 2009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 42184/05, ECHR 2010
Chapman v. the United Kingdom [GC], no. 27238/95, ECHR 2001-I
Codona v. United Kingdom (dec.), no. 485/05, 7 February 2006
Connors v. the United Kingdom, no. 66746/01, 27 May 2004
Costa and Pavan v. Italy, no. 54270/10, 28 August 2012
Chowdury and Others v. Greece, no. 21884/15, 30 March 2017
Cimperšek v. Slovenia, no. 58512/16, 30 June 2020

Cudak v. Lithuania [GC], no. 15869/02, ECHR 2010
Cvijetić v. Croatia, no. 71549/01, 26 February 2004
Čakarević v. Croatia, no. 48921/13, 26 April 2018
Çam v. Turkey, no. 51500/08, 23 February 2016

—D—

D. v. the United Kingdom, 2 May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II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no. 57325/00, ECHR 2007-IV
Da Conceição Mateus and Santos Januário v. Portugal (dec.), nos. 57725/12 and 62235/12, 8 October 2013
Da Silva Carvalho Rico v. Portugal (dec.), no. 13341/14, 1 September 2015
Dahlab v. Switzerland (dec.), no. 42393/98, ECHR 2001-V
Danilenkov and Others v. Russia, no. 67336/01, ECHR 2009 (extracts)
Demir and Baykara v. Turkey [GC], no. 34503/97, ECHR 2008
Denisov v. Ukraine [GC], no. 76639/11, 25 September 2018
Dhahbi v. Italy, no. 17120/09, 8 April 2014
Dian v. Denmark (dec.), no. 44002/22, 21 May 2024
Di Trizio v. Switzerland, no. 7186/09, 2 February 2016
Dickson v. the United Kingdom [GC], no. 44362/04, ECHR 2007-V
Dilek and Others v. Turkey, nos. 74611/01 and 2 others, 17 July 2007
Domenech Pardo v. Spain (dec.), no. 55996/00, 3 March 2001
Domenech Aradilla and Rodríguez González v. Spain, nos. 32667/19 and 30807/20, 19 January 2023

—E—

Ebrahimian v. France, no. 64846/11, ECHR 2015
Edwards v. Malta, no. 17647/04, 24 October 2006
Efe v. Austria, no. 9134/06, 8 January 2013
Emel Boyraz v. Turkey, no. 61960/08, 2 December 2014
Enerji Yapı-Yol Sen v. Turkey, no. 68959/01, 21 April 2009
Enver Şahin v. Turkey, no. 23065/12, 30 January 2018
Eşim v. Turkey, no. 59601/09, 17 September 2013
Evans v. the United Kingdom [GC], no. 6339/05, ECHR 2007-I
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s. 48420/10 and 3 others, ECHR 2013 (extracts)

—F—

F.J.M. v. the United Kingdom (dec.), no. 76202/16, 6 November 2018
Fábián v. Hungary [GC], no. 78117/13, 5 September 2017
Farcaş v. Romania (dec.), no. 32596/04, 14 September 2010
Faulkner and McDonagh v. Ireland (dec.), nos. 30391/18 and 30416/18, 8 March 2022
Fawsie v. Greece, no. 40080/07, 28 October 2010
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no. 56030/07, ECHR 2014 (extracts)

—G—

G.L. v. Italy, no. 59751/15, 10 September 2020
García Mateos v. Spain, no. 38285/09, 19 February 2013
Garib v. the Netherlands [GC], no. 43494/09, 6 November 2017
Gawlik v. Liechtenstein, no. 23922/19, 16 February 2021
Gaygusuz v. Austria, 16 Sept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Gladysheva v. Russia, no. 7097/10, 6 December 2011
Glaisen v. Switzerland (dec.), no 40477/13, 25 June 2019

Glor v. Switzerland, no. 13444/04, ECHR 2009
Gouarré Patte v. Andorra, no. 33427/10, 12 January 2016
Grzęda v. Poland [GC], no. 43572/18, 15 March 2022
Guberina v. Croatia, no. 23682/13, 22 March 2016
Guja v. Moldova [GC], no. 14277/04, ECHR 2008

—H—

Heinisch v. Germany, no. 28274/08, ECHR 2011 (extracts)
Herbai v. Hungary, no. 11608/15, 5 November 2019
Hoppen and trade union of AB Amber Grid employees v. Lithuania, no. 976/20, 17 January 2023
Horváth and Kiss v. Hungary, no. 11146/11, 29 January 2013
Howald Moor and Others v. Switzerland, nos. 52067/10 and 41072/11, 11 March 2014
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nos. 24816/14 and 25140/14, 10 March 2020
Humpert and Others v. Germany [GC], nos. 59433/18 and 3 others, 14 December 2023
Hutten-Czapska v. Poland [GC], no. 35014/97, ECHR 2006-VIII

—I—

I.B. v. Greece, no. 552/10, ECHR 2013
I.G. and Others v. Slovakia, no. 15966/04, 13 November 2012
Ivanova and Cherkezov v. Bulgaria, no. 46577/15, 21 April 2016

—J—

J.D. and A v. the United Kingdom, nos. 32949/17 and 34614/17, 24 October 2019
Jankauskas v. Lithuania (no. 2), no. 50446/09, 27 June 2017
Junta Rectora Del Ertzainen Nazional Elkartasuna (ER.N.E.) v. Spain, no. 45892/09, 21 April 2015
Jurčić v. Croatia, no. 54711/15, 4 February 2021

—K—

Karlheinz Schmidt v. Germany, 18 July 1994, Series A no. 291-B
Karner v. Austria, no. 40016/98, ECHR 2003-IX
Kasmi v. Albania, no. 1175/06, 23 June 2020
Kaya and Seyhan v. Turkey, no. 30946/04, 15 September 2009
Kaymak and Others v. Türkiye, no. 62239/12, 20 June 2023
Khan v. France, no. 12267/16, 28 February 2019
Kjartan Ásmundsson v. Iceland, no. 60669/00, ECHR 2004-IX
Klein v. Austria, no. 57028/00, 3 March 2011
Kosiek v. Germany, 28 August 1986, Series A no. 105
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no. 30078/06, ECHR 2012 (extracts)
Koua Poirrez v. France, no. 40892/98, ECHR 2003-X
Koufaki and Adedy v. Greece (dec.), nos. 57665/12 and 57657/12, 7 May 2013
Kozak v. Poland, no. 13102/02, 2 March 2010
Kubát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nos. 61721/19 and 5 others, 22 June 2023
Kudeshkina v. Russia, no. 29492/05, 26 February 2009
Kurtulmuş v. Turkey (dec.), no. 65500/01, ECHR 2006-II

—L—

L.F. v. the United Kingdom (dec.), no. 19839/21, 24 May 2022
L.L. v. France, no. 7508/02, ECHR 2006-XI
Lacatus v. Switzerland, no. 14065/15, 19 January 2021
Larissis and Others v. Greece, 24 Februar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

Lavida and Others v. Greece, no. 7973/10, 30 May 2013
Le Marrec v. France (dec.), no. 52319/22, 5 November 2024
Leander v. Sweden, 26 March 1987, Series A no. 116
Lindheim and Others v. Norway, nos. 13221/08 and 2139/10, 12 June 2012
Lombardi Vallauri v. Italy, no. 39128/05, 20 October 2009
Luczak v. Poland, no. 77782/01, 27 November 2007
Lustig-Prean and Beckett v. the United Kingdom, nos. 31417/96 and 32377/96, 27 September 1999

—M—

M.A. v. Italy, no. 70583/17, 31 August 2023
M.A. and Others v. France, nos. 63664/19 and 4 others, 25 July 2024
M.S.S. v. Belgium and Greece [GC], no. 30696/09, ECHR 2011
Mag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nos. 12959/05 and 5 others, 3 May 2012
Manole and “Romanian Farmers Direct” v. Romania, no. 46551/06, 16 June 2015
Matelly v. France, no. 10609/10, 2 October 2014
Matúz v. Hungary, no. 73571/10, 21 October 2014
McCann v. the United Kingdom, no. 19009/04, ECHR 2008
Menesson v. France, no. 65192/11, ECHR 2014 (extracts)
Mocie v. France, no. 46096/99, 8 April 2003
Moraru and Marin v. Romania, nos. 53282/18 and 31428/20, 20 December 2022
Moustahi v. France, no. 9347/14, 25 June 2020
Mótko v. Poland (dec.), no. 56550/00, 11 April 2006
Moskal v. Poland, no. 10373/05, 15 September 2009
Mubilanzila Mayeka and Kaniki Mitunga v. Belgium, no. 13178/03, ECHR 2006-XI
Muñoz Díaz v. Spain, no. 49151/07, ECHR 2009
Muskhadzhiyeva and Others v. Belgium, no. 41442/07, 19 January 2010
Mytilinaios and Kostakis v. Greece, no. 29389/11, 3 December 2015

—N—

N. v. the United Kingdom [GC], no. 26565/05, ECHR 2008
N.B. v. Slovakia, no. 29518/10, 12 June 2012
N.H. and Others v. France, nos. 28820/13 and 2 others, 2 July 2020
N.T.P. and Others v. France, no. 68862/13, 24 May 2018
Nafornița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49066/12, 16 January 2024
Naidin v. Romania, no. 38162/07, 21 October 2014
Napotnik v. Romania, no. 33139/13, 20 October 2020
National Union of Belgian Police v. Belgium, 27 October 1975, Series A no. 19
National Union of Rail, Maritime and Transport Workers v. the United Kingdom, no. 31045/10, ECHR 2014
Niedzwiecki v. Germany, no. 58453/00, 25 October 2005

—O—

O’Rourke v. UK (dec.), no. 39022/97, 26 June 2001
Obst v. Germany, no. 425/03, 23 September 2010
Ognevenko v. Russia, no. 44873/09, 20 November 2018
Okpisz v. Germany, no. 59140/00, 25 October 2005
Oleksandr Volkov v. Ukraine, no. 21722/11, ECHR 2013
Orlić v. Croatia, no. 48833/07, 21 June 2011
Oršuš and Others v. Croatia [GC], no. 15766/03, ECHR 2010
Özpınar v. Turkey, no. 20999/04, 19 October 2010

—P—

P. and S. v. Poland, no. 57375/08, 30 October 2012
P.B. and J.S. v. Austria, no. 18984/02, 22 July 2010
Pajqk and Others v. Poland, nos. 25226/18 and 3 others, 24 October 2023
Palomo Sánchez and Others v. Spain [GC], nos. 28955/06 and 3 others, ECHR 2011
Paposhvili v. Belgium [GC], no. 41738/10, 13 December 2016
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no. 25358/12, 24 January 2017
Pasquinelli and Others v. San Marino, no. 24622/22, 29 August 2024
Pengezov v. Bulgaria, no. 66292/14, 10 October 2023
Perkins and R. v. the United Kingdom, nos. 43208/98 and 44875/98, 22 October 2002
Petrovic v. Austria, 27 March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
Philippou v. Cyprus, no. 71148/10, 14 June 2016
Pibernik v. Croatia, no. 75139/01, 4 March 2004
Pichkur v. Ukraine, no. 10441/06, 7 November 2013
Pişkin v. Turkey, no. 33399/18, 15 December 2020
Polyakh and Others v. Ukraine, nos. 58812/15 and 4 others, 17 October 2019
Popov v. France, nos. 39472/07 and 39474/07, 19 January 2012
Popović and Others v. Serbia, nos. 26944/13 and 3 others, 30 June 2020
Prokopovich v. Russia, no. 58255/00, ECHR 2004-XI (extracts)

—R—

R.R. v. Poland, no. 27617/04, ECHR 2011 (extracts)
Rantsev v. Cyprus and Russia, no. 25965/04, ECHR 2010 (extracts)
Rainys and Gasparavičius v. Lithuania, nos. 70665/01 and 74345/01, 7 April 2005
Redfearn v. the United Kingdom, no. 47335/06, 6 November 2012
Regner v. the Czech Republic [GC], no. 35289/11, 19 September 2017
Roche v. the United Kingdom [GC], no. 32555/96, ECHR 2005-X
Romeva v. North Macedonia, no. 32141/10, 12 December 2019
Runkee and White v. the United Kingdom, nos. 42949/98 and 53134/99, 10 May 2007
Ryser v. Switzerland, no. 23040/13, 12 January 2021

—S—

S.H. and Others v. Austria [GC], no. 57813/00, ECHR 2011
S.M. v. Croatia [GC], no. 60561/14, 25 June 2020
S.-H. v. Poland (dec.), no. 56846/15 and 56849/15, 16 November 2021
Sabah El Leil v. France [GC], no. 34869/05, 29 June 2011
Salay v. Slovakia, no. 29359/22, 27 February 2025
Šaltinytė v. Lithuania, no. 32934/19, 26 October 2021
Sampanis and Others v. Greece, no. 32526/05, 5 June 2008
Sanlısoy v. Turkey (dec.), no. 77023/12, 8 November 2016
Santos Hansen v. Denmark (dec.), no. 17949/07, 9 March 2010
Savickis and Others v. Latvia [GC], no. 49270/11, 9 June 2022
Savran v. Denmark [GC], no. 57467/15, 7 December 2021
Schmidt and Dahlström v. Sweden, 6 February 1976, Series A no. 21
Schuler-Zraggen v. Switzerland, 24 June 1993, Series A no. 263
Schuitemaker v. the Netherlands (dec.), no. 15906/08, 4 May 2010
Schüth v. Germany, no. 1620/03, ECHR 2010
Şerife Yiğit v. Turkey [GC], no. 3976/05, 2 November 2010
Shylina v. Ukraine, no. 2412/19, 15 February 2024
Siebenhaar v. Germany, no. 18136/02, 3 February 2011

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nos. 55480/00 and 59330/00, ECHR 2004-VIII
Sigurður A. Sigurjónsson v. Iceland, 30 June 1993, Series A no. 264
Siliadin v. France, no. 73316/01, ECHR 2005-VII
Simonova v. Bulgaria, no. 30782/16, 11 April 2023
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no. 2330/09, ECHR 2013 (extracts)
Smith and Grady v. the United Kingdom, nos. 33985/96 and 33986/96, ECHR 1999-VI
Solomakhin v. Ukraine, no. 24429/03, 15 March 2012
Sørensen and Rasmussen v. Denmark [GC], nos. 52562/99 and 52620/99, ECHR 2006-I
Statileo v. Croatia, no. 12027/10, 10 July 2014
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GC], nos. 65731/01 and 65900/01, ECHR 2005-X
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s. 65731/01 and 65900/01, ECHR 2006-VI
Stefanetti and Others v. Italy, nos. 21838/10 and 7 others, 15 April 2014
Straume v. Latvia, no. 59402/14, 2 June 2022
Stummer v. Austria [GC], no. 37452/02, ECHR 2011
Swedish Transport Workers Union v. Sweden (dec.), no. 53507/99, ECHR 2004-XII (extracts)

—T—

Tarakhel v. Switzerland [GC], no. 29217/12, ECHR 2014 (extracts)
Tchokontio Happi v. France, no. 65829/12, 9 April 2015
Teteriny v. Russia, no. 11931/03, 30 June 2005
The Karibu Foundation v. Norway, no. 2317/20, 10 November 2022
Thlimmenos v. Greece [GC], no. 34369/97, ECHR 2000-IV
Topčić-Rosenberg v. Croatia, no. 19391/11, 14 November 2013
Travaš v. Croatia, no. 75581/13, 4 October 2016
Tüm Haber Sen and Çınar v. Turkey, no. 28602/95, ECHR 2006-II
Tysiqc v. Poland, no. 5410/03, ECHR 2007-I

—U—

Unite the Union v. the United Kingdom (dec.), no. 65397/13, 3 May 2016

—V—

V.C.L. and A.N. v. the United Kingdom, nos. 77587/12 and 74603/12, 16 February 2021
Valdís Fjölfnisdóttir and Others v. Iceland, no. 71552/17, 18 May 2021
Valkov and Others v. Bulgaria, nos. 2033/04 and 8 others, 25 October 2011
Vavříčk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nos. 47621/13 and 5 others, 8 April 2021
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no. 63235/00, ECHR 2007-II
Vilnes and Others v. Norway, nos. 52806/09 and 22703/10, 5 December 2013
Vlahov v. Croatia, no. 31163/13, 5 May 2022
Vogt v. Germany, 26 September 1995, Series A no. 323
Vrontou v. Cyprus, no. 33631/06, 13 October 2015
Vörður Ólafsson v. Iceland, no. 20161/06, ECHR 2010

—W—

Weller v. Hungary, no. 44399/05, 31 March 2009
Willis v. the United Kingdom, no. 36042/97, ECHR 2002-IV

—X—

X and others v. Ireland, nos. 23851/20 and 24360/20, 22 June 2023
Xhoxhaj v. Albania, no. 15227/19, 9 February 2021

—Y—

Yakut Republican Trade-Union Federation v. Russia, no. 29582/09, 7 December 2021

Yilmaz v. Turkey, no. 36607/06, 4 June 2019

Yocheva and Ganeva v. Bulgaria, nos. 18592/15 and 43863/15, 11 May 2021

Young, James and Webster v. the United Kingdom, 13 August 1981, Series A no. 44

Yordanova and Others v. Bulgaria, no. 25446/06, 24 April 2012

—Z—

Z v. Finland, 25 February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

Zakharova and Others v. Russia, no. 12736/10, 8 March 2022

Zanola v. Italy (dec.), no. 59963/21, 21 November 2023

Žegarac v. Serbia (dec.), no. 54805/15 and 10 others, 17 January 2023

Zehnalova and Zehnal v. the Czech Republic (dec.), no. 38621/97, 14 May 2002

Zeïbek v. Greece, no. 46368/06, 9 July 2009